

올바른 차별금지법 제정을 위한 쟁점포럼

차별금지법, 여섯가지 이유있는 걱정 그 두 번째  
**<차별금지에서 혐오범죄가 갖는 의미>**

---

| 일 시 2010년 7월 22일(목) 오후 2시 | 장 소 국가인권위원회 배움터(11층)

반차별공동행동

<http://chachacha.jinbo.net>



✓ 차례

---

**발제**

---

혐오/혐오범죄의 의미와 필요성  
- '왜' 혐오를 이야기해야 하는가

몽 (반차별공동행동/언니네트워크)

---

한국에서의 인종(다문화/가족형태 등) 관련한 혐오의 양상, 혐오범죄 규정의 의미  
- 인종주의(Racism)와 제노포비아(Xenophobia)

정혜실 (다문화가족협회)

---

혐오의 정의와 혐오범죄에 대한 해외 사례, 한국사회의 적용에 대한 고민  
- 혐오범죄를 막는 해외사례  
- 스웨덴의 동성애자 혐오범죄 대책을 중심으로 -

박정준 (서울대 서양사학과)

---

혐오범죄 제도화의 의미와 가능성, 차별금지법과의 관계  
혐오범죄 관련법의 제도화 가능성과 의미

오가람 (반차별공동행동/친구사이)

---

**전체토론**

---

올바른 차별금지법 제정을 위한 쟁점포럼

혐오/혐오범죄의 의미와 필요성

- '왜' 혐오를 이야기해야 하는가

몽 (반차별공동행동/언니네트웍)

반차별공동행동에서 차별금지법 쟁점포럼을 기획하며 중요한 고민주제로서 모욕감, 혐오/증오와 같은 단어들을 떠올렸을 때를 생각해본다. 2007년 누더기 차별금지법 제정 사태 이후 다시 차별금지법을 논의하게 된 현재 시점에서, 인간다운 삶을 살 권리, 동등한 시민으로서 대우받을 권리, 차별받지 않을 권리를 위해 모욕감과 혐오/증오라는 키워드로 이야기해볼 필요가 있다고 느꼈던 이유는, 아마도 차별현상이 가진 '역사성'과 '권력의 문제'를 드러낼 수 있는 적합한 (그렇지만 충분히 이야기되지 않은) 주제였기 때문이라고 생각한다. 이 글에서는 차별금지법 제정에 어떻게 혐오범죄가 명문화되고 규정될 수 있는가에 대한 구체적인 안을 제시한다기 보다, 혐오범죄에 대한 논의를 시작하기 위해 우리 사회에서 혐오가 어떠한 방식으로 이해되어야 하는지에 대한 고민과, 혐오/증오를 이야기하는 것이 차별해소와 차별감수성 증진을 위한 개입과 헌신의 실천으로 구성되어야 할 필요성에 대해서 이야기하고자 한다.

'왜' 혐오를 이야기해야 하는가

**혐오(嫌惡)**는 어떠한 것을 공포, 불결함 따위 때문에 기피하는 감정으로, 그 기피하는 정도가 단순히 가까이 하기 싫어하는 정도가 아닌 감정을 의미한다. 혐오는 주로 미각에서 기인하고 때문에 미각과 관련된 사건과 잘 연합 된다.

**증오(憎惡)**란 좋아하지 않는 감정 즉 반감이 강한 상태를 말한다. 특정 음식을 싫어할 때와 다른 사람을 증오하는 데 이르기까지 여러 맥락에 걸쳐 두루 나타날 수 있는 상태이다. 사람에 대한 증오의 극단적인 예로 역사상 특정 인종 집단에 대한 증오가 인종차별주의로 나타나기도 했다. ... 일반인들도 증오는 대체로 오래 지속된다고 보기 때문에, 일시적인 감정 상태라기보다는 태도나 개인의 기질로 여겨진다.

- 위키백과

혐오와 증오라는 용어가 구체적으로 어떤 의미인지에 대한 사회적 논의가 많지 않고 체계적으로 구분되어 사용되고 있지 않는 상황이라는 점에서, 차별행위를 더 잘 이해하고 표현하기 위한 용어로 무엇이 더 적합한지에 대한 고민에서 시작할 필요가 있을지도 모른다. ‘혐오식품’이라는 말처럼 혐오가 주로 어떤 대상에 대한 호불호를 드러내는 경향이 있다는 점에서, 단선적이지 않고 지속성인 특성을 가지면서 가치판단을 전제한 태도와 감정을 표현하는 증오가 차별행위를 드러내기에 더 적합할 수도 있다. 하지만 기피의 감정이 차별행위의 중요한 요소(특정한 개인이나 집단에 대한 기피가 특정영역에서의 배제를 가져오는 경우 등)이기도 하다는 점, 차별행위가 명확하게 행위자에게 차별로 인지되지 않은 상태에서도 발생하고 기피가 반감을 전제하기도 한다는 점, 그리고 사회적으로 체감되는 정도가 각기 다르다는 점 등을 고려해볼 때 판단하기는 쉽지 않다.<sup>1)</sup>

좀 더 면밀하게 살펴보아야 하는 것은 차별의 원인 혹은 결과로서 혐오/증오가 어떻게 사회적으로 의미화 되고 있는가 하는 부분이다.

정치인으로 선거에 출마하는 것은 괜찮지만 (여자를) 사랑하는 것은 싫다

<레즈비언정치도전기>, 최현숙씨의 국회의원 출마에 대한 한 남성의 인터뷰

부천 중부경찰서 계남지구대 소속 경찰은 가해자인 박씨에게 “양복까지 입고 좋게 생기신 분이 왜 여기서 힘들게 사는 사람한테 그랬어요?”라고 말한 반면, 후세인에게는 “어떻게 1982년생이 연구교수가 되냐. 정확히 무얼하는 사람이나”고 하대하는 듯한 태도를 보였다. 결국 후세인 등은 인권위에 진정을 냈다.

한겨레. 2010. 07. 14. “인권위, 경찰·공무원에 “말조심””

사건이 있는 지 한 달 후 두 사람은 사건을 맡은 담당검사 앞에서 다시 만났다. 한 달 전 그에게 욕을 퍼붓던 사내는 자신의 실수였다고 매우 정중하고 예의바르게 그에게 사과했다. 후세인 교수 역시 사내를 처벌하고 싶은 생각을 없었지만 고소를 취하지는 않았다.

레이디경향. 2010. 10. “인종차별적 발언으로 첫 기소 사례 만든 보노짓 후세인 교수”

그 기사들이 다루고 있는 것은 특정한 사람인 한 인간의 살해가 아니라 어떤 계급에 속한 구성원의 살해였다. 나는 이것이 린치의 본질이라고 생각한다. ... 나는 내 앞에서 있는 어떤 흑인을-이 흑인을 보지 않는다. 나는 하나의 검둥이를 본다. 혹은 아무것도 보지 않고, 흑인이 존재한다면 서 있을 그 공간에 내가 보고 싶은 것이나 보아야 할 것을 투사한다.

<거짓된 진실>, 데릭 젠슨, 2008.

모든 발화, 모든 행위는 단순한 설명이나 묘사가 아니라 사회적 위치와 관계 위에서 이루어

1) 이 글에서는 Hate Crime이 대체로 ‘혐오범죄’로 표현되고 있다는 점에서 ‘혐오’로 대표해 표기한다.

지는 협상적 발화와 행위라는 점에서, ‘혐오/증오’는 일시적이고 분절된 상황에서, 특정한 개인에게 목격되는 개별적인 감정으로서 ‘만’ 존재하지 않는다. 혐오의 중요한 특징은 타자에 대한 폭력과 분노, 기피와 반감의 감정을 관통하는 ‘연속성’과 ‘역사성’, ‘집단(정체)성’이다. 그리고 이러한 특성들이 드러날 때에 어떻게 ‘의도’없이 차별로 ‘인지’되지 않은 상태에서 차별이 이루어질 수 있는지, 혐오가 어떻게 특정한 집단과 이데올로기를 지속시키는 중요한 기제로 기능하는지를 보여줄 수 있다.

문제는 혐오를 사회문화적 맥락과 역사에 따라 집합적으로 형성되는 정치적인 어떤 것이 아니라 개인의 감정적, 정서적인 것으로 제한하고자 하는 시도들이 차별의 해소와 해결방법에서 특정한 효과를 갖는다는 점이다. 혐오가 개별적인 것, 감정적인 것, 단선적인 것으로 ‘탈정치화’ 될 때, 사회적 소수자에 대한 차별은 개인적인 윤리의 실천 차원(매너, 배려, 예의, 관용 등)에서 해결 가능한 것으로 대체되고, 차별을 방지하는 방식은 불쾌함이나 반감을 느끼는 개인이 그것을 불러일으키는 타인의 존재를 참거나, 용인하거나, 포용하는 것으로 귀결될 수 있다. (참거나, 용인하거나, 포용하지 못하는 불쾌함을 느꼈을 때에는? 타자에 대한 폭력이나 분노를 표출하는 것을 정당화한다<sup>2)</sup>)

혐오가 등장하게 된 배경과 혐오의 감정을 ‘누가’ ‘누구에게’ 갖게 되는가를 조건 짓는 권력 관계를 배제할 때, 차별해소의 요구는 사회정의를 실현하기 위한 정치적인 투쟁이 아니라 (법으로서 제정될 필요 없는) 도덕적으로 지켜야 할 어떤 원칙에 대한 요구가 된다. 2007년 차별금지법 제정 당시 7개의 차별사유가 삭제된 상황에 대해 수 많은 사람들이 분노했던 이유가 7개의 사유로 인해 발생한 차별행위를 유사한 방식으로 ‘몽개려는’ 의도 때문이었다는 사실은, 차별금지법에서 ‘혐오’를 어떠한 방식으로 의미화 할 것인가에 대한 중요한 메시지를 담고 있다고 생각한다.

### 혐오‘범죄’라는 명명의 의미와 효과

혐오로 동기화된 차별에 반대하는 것이 단순히 도덕적인 요구가 아니라 사회정의와 평등에 대한 요구라는 점은 혐오‘범죄’에 대한 국가의 책무와 개입, 제도적 정의의 필요성을 드러낸다. 대부분의 차별과 관련된 국제규약들은 실제로 혐오범죄에 대한 국가의 의지를 확인할 수 있는 처벌 사례의 수치나 통계를 중요하게 여기고 있고, 구체적인 행동프로그램을 제도로 마련할 것을 촉구하고 있다.

<시민적·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자유권규약) 제20조 2항에서는 ‘차별, 적의 또는 폭력의 선동이 될 민족적 인종적 또는 종교적 증오의 고취는 법률에 의하여 금지된다’라고 명시하고 있으며, <더반 선언문>(인종주의, 인종차별, 외국인혐오 및 이와 관련된 불관용 철폐를 위한 세계회의 채택 문건)은 모든 형태의 인종차별에 대해 국가, 지역, 및 국가차원에서

2) 동성애차별금지법안 저지 의회선교연합은 2007년 10월 기자회견 자료에서 “차별이란 개념은 광범위한 것이다. 그래서 ‘동성애자들을 차별해야 하느냐 안해야 하느냐’라고 묻기보다는 ‘어느 정도의 차별이 적절한가?’하고 묻는 것이 맞다고 본다. 그런데 동성애차별금지법안은 ... 어떠한 수치심, 모욕감, 두려움을 주어서는 안되고, 혐오와 편견을 교육내용에 포함시켜도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라고 주장한 바 있다. 혐오나 편견을 ‘실천’하는 것은 ‘해서는 안되는’ 일이 아니라 ‘어떤 경우에(참거나 포용할 수 없을 때) 할 수 있는 일’이 된다.

예방, 교육, 보호를 위한 행동규범이나 자기규제와 같은 정책을 마련할 것을 촉구하고 있다.<sup>3)</sup> 또한 <표현의 자유와 평등에 관한 캄덴 원칙>에서는 ‘차별을 조장하거나 평등과 문화 간 이해를 해치는 발언’에 대한 국가의 책임을 공식적 행위 규범에 명기하도록 의무화하고 있고, 표현의 자유와 혐오발언에 대해서도 ‘차별과 적대감 또는 폭력 선동을 구성하는 혐오를 금지하는 법률’을 채택할 것을 명시하고 있다.<sup>4)</sup>

하지만 혐오범죄(Hate Crime)과 혐오발언/언론(Hate Speech) 처벌에 대한 격렬한 논쟁이 보여주듯, 차별금지법에서 차별행위로서의 혐오를 어떻게 규정하고 처벌<sup>5)</sup>/구제할 것인가, 그리고 그와 관련된 국가의 책무를 어느 수준까지로 규정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많은 논쟁이 존재한다. 이는 혐오가 단순히 법적 범주에서 범죄 행위로서만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사회현상’으로 차별과 범죄의 정의와 경계를 지속적으로 변화시키고 있기 때문이다. 이는 특정한 혐오의 양상을 차별을 야기하는 행위로 판단하고 구분하는 것 그 자체가 갖는 의미가 무엇인지를 돌아볼 필요가 있다는 의미이기도 하다.

#### 차별행위로 규정되는 혐오의 양상

국제규약의 경우, 혐오가 ‘차별’이 아니라 단순히 ‘인간의 고통에 대한 예의’로 환원되지 않기 위해 기본적으로 소수자에 대한 차별이나 폭력을 선동, 조장할 수 있는 경우(타인의 권리 뿐 아니라 존재를 심각한 수준으로 침해한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도 규제가 이루어질 수 있어야 함을 명시하고 있다.<sup>6)</sup> 이는 실제로 각 국가의 차별금지법이나 혐오관련법에서 ‘혐오범죄’를 어떤 방식으로 정의하고 규정하는가에서 차이를 보인다. 혐오가 표출되는 양상을 ‘범죄’로서 명명하는 것의 의도는 우선적으로 ‘제도적’인 차원에서의 처벌과 구제의 필요성을 염두에 둔 것이기 때문에, 이때의 혐오를 명시적인 차별행위로서 구성하는 기준은 좁고 엄격하게 구성될 수 밖에 없다.

미국의 경우, 최근 혐오범죄방지법안<sup>7)</sup>이 통과되면서 성정체성으로 인한 혐오범죄를 주 차원에서(혐오범죄 관련 법안이 마련된 45개 주 중에서 성적 취향이 포함된 주는 32개 주) 기소할 수 있었던 것을 연방정부 차원에서 기소할 수 있도록 되었는데, 기소권은 가해자가 피해자에게 신체적 상해(bodily injury)를 입힌 경우로 한정되어 있다. 2000년에 개정된 열국의 인종관계법(Race Relations Act)에서는 한국의 차별금지법 제정에서도 논쟁이 되었던 ‘괴롭힘’을 명시하면서 ‘다른 사람의 존엄성을 파괴할 목적으로 원하지 않는 행동을 하게 하거나, 협박(intimidate)이나 적대적(hostile)이거나, 격하(degrade)하거나 창피(humiliate)를 주거나 모욕(offensive)을 주는 환경을 만들기 위해서 원하지 않는 행동을 하게 하는 것’을

3) 국가인권위원회 번역 발간, <더반선언문 및 행동프로그램>(Documents of the World Conference against Racism, Racial Discrimination, Xenophobia and Related Intolerance), 2009.

4) 류은숙. 2009. 7. 1. “[인권문헌읽기] 표현의 자유와 평등에 관한 캄덴 원칙”. 인권오름 제159호. <표현의 자유와 평등에 관한 캄덴 원칙>(The Camden Principles on Freedom of Expression and Equality) 참고

5) 여기에서의 처벌은 구체적인 법에서 형사상의 처벌이 아니라, 차별의 결과로 나올 수 있는 공적이고 제도적인 규제와 조치(ex. 조정례)라는 의미로 사용했다.

6) <더반선언문>의 경우, 인종주의, 인종차별, 외국인혐오, 관련된 불관용(Related Intolerance)를 각각 별도로 명기하고 있다. 이는 사회적으로 차별을 ‘처벌’에 차별적인 사회문화적 조건을

7) Matthew Shepard and James Byrd, Jr. Hate Crime Prevention Act. 2009년 10월 22일 상원을 통과했다. 성적 지향과 성정체성이 모두 혐오범죄의 근거로 명시되어 있다.

규정함으로써 대부분의 공적, 사적, 그리고 임의기구가 인종차별을 하는 것을 불법화하고 있다.<sup>8)</sup> 하지만 피부색이나 국적에 의해 발생할 수 있는 경우는 제외하고 있는데, 피부색이나 국적이 넓은 의미의 인종이나 민족에 해당한다고 고용중재위원회가 판단할 경우에 실제 차별로 간주될 수 있다고 본다. 호주의 인종혐오법<sup>9)</sup>의 경우, 차별과 혐오범죄의 관계를 살펴볼 수 있는데, 주로 공적인 영역에서의 차별행위를 규정하던 ‘인종차별법’(1976)의 보호범위를 확장해 ‘모든 상황에서 그 개인 또는 그룹을 불쾌하게 하고 모욕하고 굴욕감을 느끼게 하고 위협할 상당한 개연성이 있는 경우’에 고소를 허용하는 ‘인종혐오법’(1995)을 추가 제정했다. 이는 ‘혐오’라는 차별행위가 이루어졌을 때 공적영역에서 피해자를 구제하고 사회적 소수자들을 제도적으로 보호할 수 있는 영역과 방법을 확장한 것이기도 하지만, 한 사회가 차별의 피해영역의 하나로서 사회적 소수자의 ‘감정과 상처’를 어떻게 해석해야 하는지를 논의할 수 있는 공적인 틀을 마련한 것이라고도 볼 수 있을 것이다.

#### 혐오로 인한 차별‘인 것’과 ‘아닌 것’의 구분

호주의 인종차별법과 인종혐오법이 제정되는 맥락을 볼 때, 실제 제도적으로 혐오로 인한 차별행위를 형사상의 처벌이 가능한 ‘범죄’로 규정할 수 있을 것인가의 여부를 우선 차치하고, 일상적인 삶에서 그러한 차별행위를 ‘범죄’라고 명명될 때 기대하는 것이 무엇이고<sup>10)</sup> 어떤 효과를 가져오는가에 대한 논의가 더 필요하다는 생각이 든다.

그 이유는 혐오범죄가 단순히 법적 영역에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동시에 사회 현상이기도하다는 점, 따라서 혐오, 혐오범죄, 혐오로 인한 차별행위 등 모든 것이 고정된 것이 아니라 유동적이라는 점에서 볼 때 우리가 사회에 ‘무엇이 범죄화/차별이 될 수 있는 혐오인가? 무엇이 혐오로서 ‘인정’되는가?’의 문제가 지배문화의 논리와 연관되어 있기 때문이다. 한편으로 어떤 혐오는 종교의 문제로, 관용의 문제로, 취향의 문제로, 경제문제로 탈정치화된다. 혹은 비가시화 된다. 또 한편으로 어떤 혐오는 공통된 사회적 분노를 자아내는 비일상적이고, 일탈적이고, 특정한 개인에게 특정한 상황에서 발생하는 끔찍한 범죄로서 탈정치화됨으로써 비가시화 된다. 혐오가 제도적으로 차별행위로 인지되고 규제될 수 없는 상황 자체도 문제적이지만, ‘어떤’ 혐오, ‘누구’에 대한 혐오가 혐오로 인정되고 무엇이 혐오로 인정되지 않는지에 대한 사회적 구분 그 자체가 갖는 의미와 효과에 대해 이야기될 필요가 있다. 이를 통해 차별금지법이라는 제도가 담보해야 하는 혐오가 무엇이고 실천 가능한 정치적 기획이 무엇인지, 어떻게 규정하거나 규제하기 어려운 혐오의 양상을 개인의 취향, 성향, 기질이 아니라 사회문화적인 감정의 문제, 권력의 문제로 해석할 수 있는 논의구조를 만들고 인권감수성을 환기시킬 수 있는지를 논의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8) 국가인권위원회. 2006. <차별판단지침에 대한 외국사례(출신국가 · 출신민족 · 인종 · 피부색)> p.44

9) 국가인권위원회. 2006. <차별판단지침에 대한 외국사례(출신국가 · 출신민족 · 인종 · 피부색)> p.110-115)  
이 자료집에서는 인종혐오법(Racial Hatred Act)을 ‘외국인 혐오법’으로 명기하고 있으나, Racial Discrimination Act가 인종차별법으로 해석된 만큼, 인종혐오법으로 바꿔 표시하였다.

10) (‘아웃팅은 범죄’라는 슬로건이 성소수자 운동 진영에서 등장했을 때, 모든 맥락에서 아웃팅을 범죄화하고 처벌할 수 있어야 한다는 의미로 제한되어 해석되는 것이 아니라, 이성애중심주의가 강력한 사회에서 왜 ‘특정한’ 아웃팅이 심각한 ‘범죄적’ 행위로 이해되어야 하는지 그 조건들을 살펴보는 것이 필요한 것처럼)

차별금지에서 혐오범죄가 갖는 의미

그들은 어떤 사람을 때려서 죽일 수 있었다.  
그렇게 하면서도 그들은 완전히 정상이었다.  
내가 이해할 수 없는 것은 바로 그 점이다.

- 폴란드 유대인 수용소 생존자

올바른 차별금지법 제정을 위한 쟁점포럼

한국에서의 인종(다문화/가족형태 등) 관련한 혐오의 양상, 혐오범죄 규정의 의미  
- 인종주의(Racism)와 제노포비아(Xenophobia)

정혜실 (다문화가족협회)

들어가며

1990년대 이후 본격적으로 유입되기 시작한 이주노동자와 결혼이민자, 그리고 난민의 증가와 그 자녀들의 출생으로 인해 한국사회는 결혼과 가족, 일터, 정책 등 사회 환경의 변화를 초래하였다. 이는 법적, 정치적, 경제적, 교육적인 부분에 이르는 광범위한 측면에서의 변화를 요구하기에 이르렀고, 이러한 과정에서 발생하고 있는 제반 문제를 국가는 ‘다문화주의(Multiculturalism)’라는 관점에서 해결하고자 한다.

그러나 이러한 국가적인 ‘다문화주의(Multiculturalism)’ 표방과는 달리 한국사회내의 평범한 사람들이 살아가는 일상에서는 일명 ‘보노짓 후세인 사건’으로 알려진 인종차별에 대한 문제가 이슈화되기 시작했다. 그러한 인종주의와 관련된 사건은 사이버상의 온라인 커뮤니티 활동에서부터, 단순한 개인적 댓글달기뿐만 아니라, 일터와 시장, 거리, 지하철과 같이 이주자의 삶이 영위되는 곳곳에서 일어나고 있다. 그리고 또한 사회적 담론을 생산해 내는 언론이나 미디어를 통해 이주자는 ‘잠재적 범죄자’이거나 ‘왕따’ 그리고 ‘도움이 필요한 사람’이라는 등의 낙인(stigma)이 강화되고 있으며, 정책적으로는 분리적인 차별 대상으로 제도화되어 이주자들에 대한 편견(prejudice)이 악순환 되는 과정에 있다.

그런데 우리는 인종주의 문제를 백인과 흑인이 섞여 사는 먼 나라의 일로 생각하거나 인간의 이성이 발달하지 못했던 과거에나 있었던 일로 생각한다. 그것도 아니라면 남들은 몰라도 적어도 나는 인종주의와 아무런 상관이 없는 사람이라고 생각한다. 그러나 인종주의는 일상생활에서 멀리 있는 것이 아니며 오늘날 개인의 사고방식에서부터 국제 질서에 이르기까지 이미 깊숙이 자리 잡고 있는 문제이다. 곧 인종주의가 우리 삶의 모든 영역에서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박경태, 2009).

그러나 우리 단순히 인종주의의 문제만을 이야기 할 수 없는 지점에 와있다. 왜냐하면 인종주의의 문제가 제노포비아와 결부되어 나타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인종주의와 제노포비아에 대한 정확한 구별 없이 혼동된 개념으로 사용하고 있으며, 소위 인종차별이라고 할 때 이것이 인종적 우월주의에서 나타난 인종차별인지 인종적으로 다른 것으로 인한 인종차별인지에 대해 구분 없이 사용하고 있다고 봐야 할 것이다. 사실 인종과 관련하여 인종우월주의이든, 제노포비아든 이러한 현상이 불러오는 문제점은 한국사회의 소수자인 이주민들의 삶을 법적, 경제적, 문화적으로 어렵게 만들고 있다는 사실이다. 즉 이주

민의 노동의 질에 대한 평가에서 비롯되는 체류조건을 차별화하는 신분차별과 경제적 삶의 질의 차별화 그리고 이주민들의 종교적 배경과 제3세계라는 저개발국가라는 국가적 위계로부터 비롯되는 문화적인 삶의 질의 차별화 등이 정책과 일상을 통해 이주민의 삶을 지배하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이렇게 이주민의 삶에 영향을 미치는 인종주의와 제노포비아의 문제를 한국사회에 어떻게 드러내고 있는 지 고민해봐야 할 시점이라고 본다.

### 인종주의와 제노포비아 어떻게 볼 것인가?

2009년 현재 외국인인 (표1)에서 볼 수 있듯이 총 1,168,477명이고 이중 이주노동자(미등록, 동포포함)는 전체 외국인 중 59.1%로 690,611명이고, 결혼이민자는 10.7%인 125,087명이다. 이러한 통계에서 알 수 있는 것은 총 외국인 체류자 중 69.8%가 단순노동시장에 유입되어 저임금과 불완전 고용사이에서 한국사회의 주변노동시장을 매우고 있는 이주민의 비율을 나타내고 있음과 동시에, 외국인의 비율 중 50%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이주노동자에 대한 정책보다 결혼이민자라고 하는 겨우 10%를 넘는 이주자들에 대한 정책이 다문화주의라고 관 주도형 정책의 대상으로 부각되어 있다는 모순된 점일 것이다. 보건복지부, 여성가족부, 교육부, 행정안전부, 문화관광부 등 모든 정부부처가 결혼이민자 여성에 대한 사회통합을 위한 정책과 지원은 아낌이 없지만, 정작 50%를 넘는 이주노동자에 대해서는 정주화 방지를 위한 정책만이 대표적 방향일 뿐이다.

(표1) 외국인 체류현황(2009년말 기준)

총 외국인 1,168,477 (100%)							
총 이주 노동자 (690,611) (59.10%)				결혼이민, 유학, 기타 (477,866) (40.90%)			
전문인력	비전문 (461,203) (39.47%)		단기취업 등	미등록	결혼이민	유학	기타
35,536 (3.04%)	일반	동포	15,917 (1.36%)	177,955 (15.23%)	125,087 (10.70%)	80,985 (6.93%)	271,794 (23.26%)
	158,198 (13.54%)	303,005 (25.93%)					

출처: 2010년 외국인이주 노동자협의회 정책토론회

그러한 정책적 방향은 출입국관리법에서 나타나는데, 법무부는 단순기능노무직이 아닌 소위 우수인재라 불리는 대상들에 대해서는 이중국적부여도 마다하지 않는 차별적 정책을 시행하고 있다. 그러나 (표2)에 볼 수 있듯이 한국사회의 산업에 있어서 단순기능노무직에 근무할 이주노동자의 수요는 계속해서 증가해 왔음을 알 수 있다. 2005년 104,348명이던 것에 비해 2009년에는 461,203명으로 4배 이상 늘어난 것이다. 이는 결국 산업의 근간에 있어서 가장 기초적인 노동인력을 구성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체류신분이나 임금으로서의 경제적 부분과 문화적 배려의 부분이 과소평가되고 있다는 것이다. 그 보다는 그들의 장기 체류가 마치 한국사회에 미칠 악영향에 대한 지나친 우려가 과잉 상상되고 있을 뿐이다.

(표2) 단순기능 외국인력의 변화 추이

출처: 2010년 외국인이주 노동자협의회 정책토론회

올바른 차별금지법 제정을 위한 쟁점포럼

	05	06	07	08	09
일반 (E-9)	52,305	115,122	134,012	156,429	158,198
동포 (H-2)	52,043	84,498	228,448	298,002	303,005
합계	104,348	199,620	362,460	454,431	461,203

그렇다고 해서 10%를 겨우 넘기는 비율의 결혼이민자여성이라고 해서 관주도형의 다문화 정책의 시혜자로서 늘 혜택을 누리고 있는 대상들은 아니다. 그들은 늘 끊임없이 민족의 혈통 속에 통합되어야 할 존재로서 한국인을 출산해야 할 재생산의 의무를 진 여성들이거나 그것이 가능할 때 존중받을 수 있는 여성이다. 그렇지 않을 때는 그녀들이 낳은 자녀들에 대한 양육자로서의 불완전함이나 그 자녀들의 성장을 평가 받아야 하는 존재이며, 그 자녀들은 그러한 사회적 기준에 따른 평가에 끊임없이 시달려야 하는 집단으로서 과도한 관심과 연구의 대상이 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이주노동자와 결혼이민자 여성 그리고 난민들이 겪어 내야 하는 차별들은 인종주의와 제노포비아 사이에서 자신의 삶을 지켜내야 하는 것이다.

그렇다면 인종주의와 제노포비아는 어떠한 차이가 있는 것일까? 우선 인종주의는 특정의 인종, 민족 등이 타 인종, 민족 등에 대해 느끼는 ‘우월하다’는 정서나 의식에 관련되는 개념이다. 그러한 사례가 백인종의 우월주의로 볼 수 있다. 이와 달리 제노포비아는 이방인이나 외국인에 대한 혐오로서 특정의 종족, 민족, 인종 등이 타 종족, 민족, 인종 등에 대해 우월감을 느끼든 열등감을 느끼든 ‘우리는 너희들과 다르다’라는 데에 바탕을 둔 정서나 의식과 관련되는 개념이다. 즉 ‘우리’(동질성)와 ‘그들’(이질성)을 구분하는 집단적인 심리형성이 제노포비아 현상 발생의 근거를 이룬다. 그리고 ‘다르다’라고 느끼는 정서나 의식은 공동체의 정체성 유지나 자기 보존 등을 위해 ‘우리와 다른 타자를 배제해야 한다’라는 정서나 의식을 포함한다. 나아가 우리와 다른 인종, 민족 등의 배제는 그들에 대한 차별을 정당화 한다(김세균 외 2003).

그러나 인종주의와 제노포비아는 혼재되어 사용될 수밖에 없다. 루스 베네딕트가 『문화의 패턴』에서 ‘나와 남을 가르는 방식’이라고 지칭한 부분이 인종주의와 제노포비아가 혼재된 상황이기 때문이다. 이는 앞서 설명되었듯이 ‘우리’와 ‘남’을 가르는 방식이면서 ‘우리’라고 하는 민족적 공동체 의식이 ‘타 민족’이라고 하는 배타적 의식을 작동시키기 때문이다. 이는 뿌리 깊게 한국사회에 남아 있는데, 그것을 상징하는 것이 바로 ‘이태원’이라는 장소이자 의미일 것이다. 그리고 그러한 태생의 이질성이 혐오스런 감정을 불러일으키도록 작동시킨 언어들인 ‘양공주’이고 ‘혼혈아, 튀기’라는 말이다.

그러나 현재 이태원은 이국적 음식을 맛보며 비싼 값을 치러야 하는 문화적 패션의 장소가 되어가고 있으며, 개발로 인해 과거의 모습은 곧 잊혀 질 예정이다. 그런가 하면 혼혈의 의미도 퇴색되어 ‘다문화가정의 자녀’라는 말로 포장되어 가고 있다. 그러나 우린 여전히 그 다름을 부각시키고 싶어 하기에 부르디외의 말처럼 끝없는 ‘구별짓기’를 시도하고 있다. 다른 아이들만 모아 대안학교라는 명목으로 분리적 차별교육을 시행하는데 주저함이 없는 NGO의 주장들의 노력을 보아야만 하고, 거기엔 막대한 예산이 오고가는 것을 목도하게 된

다. 그런가 하면 노무현 정권에서 이명박 정권으로 그리고 한나라당의 압도적인 지방자치단체에서 민주당의 지배로의 변화를 목도하면서 그 사이에서 너울대며 춤추는 NGO들의 변화 무쌍함이 이주민을 대상으로 한 사업의 방향성에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보고 있다.

그런가 하면 외국인의 10%를 간신히 넘긴 결혼이민자에게 비례대표로서 정치에 진출할 기회를 주겠다고 언론에 몰태우더니 허울 좋은 명분만 챙기고 당사자들을 몰래 빼버리는 사태도 있었다.

또한 일반 시민들의 의식이란 다문화사회라는 명목과 달리 지하철에서 거리에서도 버스에서도 이웃에서도 그리고 가정에서마저도 이주자라면 시비를 걸고, 폭언을 일삼고, 폭력도 휘두른다. 그러한 예는 지난 6월 방영된 KBS 인간극장이라는 다큐에 출연했던 한국여성과 결혼한 인도남성에 대한 이야기에서도 드러났다. 인도와 한국의 문화차이를 극복해 가는 과정에서 장모님과의 갈등과 해소를 자연스럽게 그려나갔음에도 불구하고 방송국 온라인상에서 심한 공격을 받았다. 이러한 댓글에 상처받은 파키스탄커플모임의 온라인 회원들은 너무 충격을 받았다고 글을 올렸었다. 같은 무슬림이면서 문화적 차이로 인해 그러한 오해를 받았던 경험을 가진 한국여성들로서 충분히 공감이 가는 부분인 동시에 그것이 세월이 흐르면서 서로에 대한 이해 속에서 해결해 온 경험을 가지고 있기에 지나친 공격적 발언들에 대해서는 인종차별로 느끼고 있었다. 늘 그렇듯이 백인남성이 보여주는 행위와 그에 대한 평가, 그리고 한국인 남성이 결혼이민자여성에게 강요하는 문화적 폭력에 대해 관대한 한국사회가 언제나 제3세계 출신이면서 무슬림으로 살아가는 자신들의 남편에 대해서는 지나친 편견을 가지고 있다고 의식하기 때문이다.

이러한 공격적 발언들의 근거에는 인종적 우월감과 제노포비아가 혼재되어 있음을 발견하는 데, 그것을 구분지어 말하기가 쉽지 않다. 단일민족이라는 민족적 자긍심과 경제발전을 이루었다는 우월감이 작동하여 못사는 가난한 나라이며 테러로 상징되는 이슬람 종교를 가진 것 자체가 문제로 포착되기 때문인 것이다. 그러나 우리가 가진 이러한 경제적 우월감과 문화적 자부심이라는 것이 베네딕트 앤더슨이 말처럼 민족 공동체라고 하는 ‘상상의 공동체’를 유지하기 위해 동원된 수사일 뿐이다.

최근 성인종차별반대공동행동에는 또다른 사건이 접수된 적이 있다. S대의 유학생들로서 그들이 지하철 안에서 한 한국남성으로부터 알 수 없는 폭언에 시달린 사실이다. 태국출신의 유학생이었던 한 남학생은 자신이 한국말을 잘 알아듣지 못하지만 한 남성이 같이 동행한 여성에게 계속해서 무례한 행동을 취하고 있음을 직감하였다. 그래서 결국은 지하철에 근무하는 공무원과 같은 사람(지하철 공익근무요원으로 추정)에게 도움을 요청하였으나 한국말이 서투른 그들에게 통역 서비스도 제공되지 않았을 뿐 아니라, 학교에서도 전화를 받고도 어떻게 대처해야 할 지 못하였다. 뿐만 아니라 도움을 요청한 상대는 그 한국사람을 단순히 술 취한 사람 정도로만 취급하면서 그냥 무마시키려고만 하는 듯이 느꼈다고 한다.

이 사건은 피해 당사자가 한국말을 모르는 상황에서 벌어져서 정확한 내용기술이 어려워 사건화 시킬 수 없는 한계로 인해 학교 차원의 재발 방지를 위한 모색 정도로 마무리된 것으로 안다.

그런데 이 사건을 보면서 문제점으로 떠오른 것은 유학생의 신분과 이주노동자의 신분 차이에도 불구하고 이들의 피해는 사실 이주노동자라는 연장선에서 벌어진 일로 해석될 수밖에 없는 지점이다. 즉 그들이 피부색과 얼굴생김새로 인해 드러내고 있는 제3세계 출신의 사람이라는 그 지점이 이주노동자와 동일시하는 지점임과 동시에 어느새 한국사회에서는 이

러한 출신의 사람들을 한국사회의 주변인으로서 차별적 취급하고 있음을 단적으로 드러내고 있음을 보여준다 할 것이다. 현재 내가 다니는 한양대 안산캠퍼스도 외국인 유학생 중 파키스탄 출신의 유학생이 70명이상이 되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이들이 안산의 원곡동에 걸어 다닌다면 사람들은 그들을 이주노동자로 볼 것인가? 아니면 유학생으로 볼 것인가? 그리고 요즘같이 단속이 강화된 시점에서 이들은 단속반원들로부터 어떤 대우를 받게 될 것인가?

그런가 하면 작년에 Y대에 이슬람권의 유학생들이 기도처를 마련할 공간을 달라고 학교측에 요구했으나 기독교 학교라는 이유로 다른 종교를 인정할 수 없다며 기도처를 내주지 않았던 일이 있었다. 현재 어떻게 해결지점을 보았는지 알아보지 않았으나, 이러한 일을 전해준 교수의 말에서 여러 시사점들을 해석해 낼 수 있다. 프랑스에서 히잡을 쓰지 못하게 하는 것을 마치 종교가 자유인 나라에서 종교를 강요하는 듯한 행위를 금지하기 위함으로 포장하여 그들의 숨겨진 문화적인 인종차별을 드러내고 있듯이 Y대 또한 어떠한 나라의 출신의 유학생이든 공정하게 대우하는 듯한 외형을 갖추고 있지만, 유학생에 대한 문화적 배려는 조금도 고려하지 않는 종교적으로 배타적 집단일 뿐임을 단적으로 드러내고 있을 뿐이다. 왜냐하면 같은 요구조건에 대해 서울의 S대에서는 기도처를 마련해 주었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이주노동자들은 어떠한 문화적 배려를 받고 있을까? 예전에 파키스탄커플모임의 한 여성이 자기 남편과 동료들이 부친의 모처에서 마스지드(모스크)를 만들려고 공사를 시작했으나 주민의 반대로 공사 중단에 들어갔으며 어떻게 해결해야 하는 지를 모임에서 토론했던 적이 있다. 이는 교회가 어느 곳에서나 들어서는 것에 반대하지 않는 주민들이 큰 공사도 아님에도 불구하고 저지하는 이유는 종교적인 배타성외에는 해명할 방법이 없었다. 주민들은 외모적으로 드러나는 그들의 모습과 이슬람이 어느 새 테러집단으로 명시화돼버린 9.11이후의 미디어의 태도와 미국정책의 대테러전쟁은 한국사회에 이슬람에 대한 조명을 새롭게 한 부분도 있으나, 일반인들에게는 그들의 믿음과 테러를 동일 한 것으로 이해하는 부분이 늘어 난 것이다. 그들은 그저 그들이 모여서 예배할 공간을 원했을 뿐이지만 주민들은 그것을 위협으로 받아들인 것이다.

안산의 원곡동은 이주노동자들의 집결지이다. 그들의 일상이 녹아 있는 음식의 장소이자, 정보 공유의 통로이고, 축제의 장이며, 커뮤니티가 이어지는 장소이다. 그런가하면 한국인들과 이주자들이 소통하는 장소이면서 동시에 경제적 삶이 교환되는 장소이다. 그런데 이러한 곳에 살고 있는 건물주들이나 오랜 토박이들은 그들이 모여 있는 것만으로도 문제라고 보는 시각이 많다. 경찰서의 외사과는 강력범죄가 빈번하게 일어나는 우범지역으로 보고 있고, 출입국 직원들은 슬럼화된 지역으로 파악하고 있으면서 단속의 건수를 올리기 쉬운 타겟지역으로 보고 있다. NGO들에게는 그들의 사업수행을 위한 대상자가 넘쳐나는 지역으로 보고 수많은 단체들이 경쟁적으로 이곳에서 활동하고 있다. 그러나 이주자들은 스스로 원곡동을 어떻게 느끼고 있는 지 제대로 알고 있는 사람이 없는 것 같다. 그런 조사조차도 이루어지지 않은 것 같다. 그저 인권의 측면에서 이주자들의 문제를 다룬다며 노동의 문제나 임금의 문제 그리고 거주 문제만을 다루어 왔을 뿐이다. 그래서 인종차별이라는 화두에 대해서는 깊게 고민해보지 않은 부분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당사자도 NGO도 말이다.

최근 안산의 외국인주민인권증진을 위한 기본계획수립에 관한 자문회의 중에 산업인력공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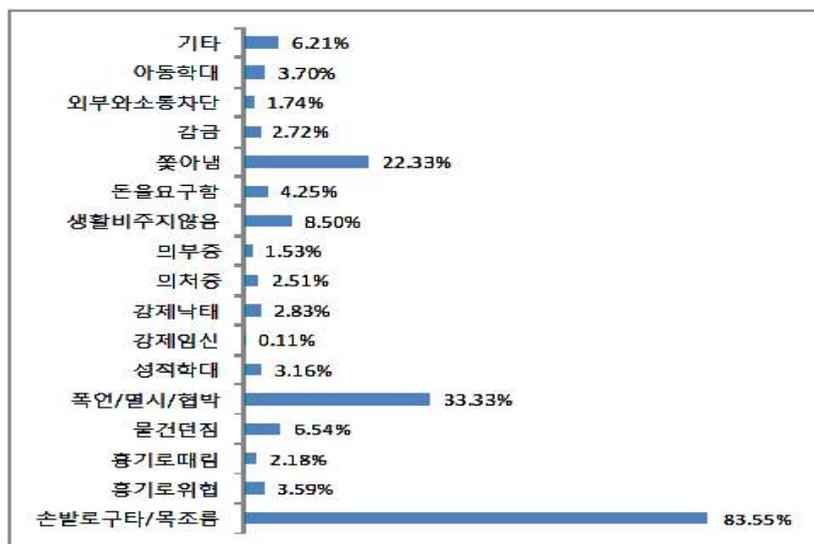
산하의 외국인근로자지원센터의 모탐장님에게 질의를 한 적이 있다. 이주노동자들은 인종차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말이다. 그 분 말씀이 인종차별에 대해서는 별로 이야기를 하지 않는다. 그들 자체가 민주적으로 덜 발달된 사회에서 왔으며, 인권이라는 부분에 대해서 감수성이 높지 않기 때문에 그 부분을 지적하는 사람은 많지 않다는 것이다. 그도 아니라면 너무나 일상적으로 자주 일어나는 일이기에 한국이라는 나라는 이렇거나 보다 하고 그저 넘기고 있을지도 모른다고 하셨다. 어떻게 봐야 할 것인가?

파키스탄 남성과 연애하고 결혼을 해 본 경험자로서 나는 인종주의와 제노포비아가 너무 일상적으로 반복적으로 일어나는 일이기에 특별한 일로 받아 들여지지 않는다는 것이 맞다고 본다. 지나가는 취객의 행위, 모두가 단속반원인 것처럼 감시의 눈초리로 쏘아 보는 주민들, 뚫어져라 쳐다보는 모르는 할머니의 눈길, 아빠가 어느 나라 사람인지 확인하고 싶어하는 마트의 직원들 등 그들은 자신들이 하는 행동이나 말이 어떤 의미를 내포하는 지에 대한 고민 없이 하지만, 당하는 사람에게는 너무나 자주 많이 일어나서 이젠 더 이상 신경쓰고 싶지도 않은 일이 되는 것이다.

그래서 인권의 감수성이나 인종주의 내지는 제노포비아의 감수성이 떨어지는 것은 제3세계에서 온 그들이 아니라 바로 우리들 자신의 무감함이라는 것을 망각하고 있다는 생각이 든다. 그것은 바로 가족 안에서도 쉽게 일어날 수 있는 일인데 말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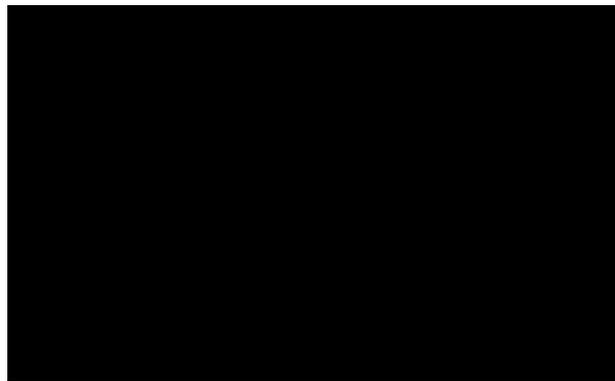
2009년 이주여성긴급지원센터에서 자체 상담에 관한 보고서를 낸 적이 있다. 가정폭력의 양태는 손발로 구타/목조름(767건, 83.55%)가 가장 많았고 폭언/멸시/협박(306건, 33.33%), 쫓아냄(205건, 22.33%), 생활비 주지 않음(78건, 8.50%), 물건던짐(60건, 6.54%), 기타(57건, 6.21%), 돈을 요구함(39건, 4.25%), 아동학대(34건, 3.70%), 흥기로 위협(33건, 3.59%), 성적학대(29건, 3.16%), 강제낙태(26건, 2.83%), 의처증(23건, 2.51%), 감금(25건, 2.72%), 흥기로 때림(20건, 2.18%), 외부와 소통차단(16건, 1.74%), 의부증(14건, 1.53%) 순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가정폭력의 양태는 단순히 남성의 가부장성이나 여성차별이 불러오는 가족 내 권력관계의 문제가 아니라 이것은 이주여성의 출신국과 관련된 인종주의적이면서 제노포비아적인 요소들이 포괄되어 있는 문제로 해석해야 한다.

도표 1. 가정폭력의 양태 (\*총 918건 대비 중복체크)



그런가 하면 외부적으로는 성폭력의 문제가 심각하다. 이주여성긴급지원센터에서 2009년 4월에서 6월까지 상담한 36건의 도표에서 보듯이 아주 심각한 강간의 수준에 까지 이주여성들이 겪어내야 하는 일들이 일어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이주여성에 대한 신체적이면서 동시에 성적인 공격들은 단순히 남성이 여성의 섹슈얼리티에 대한 침해 인 것이 아니라 인종과 결부되어 일어난다는 점이 문제라는 것이다.

도표 2 성폭력의 형태(총36건 대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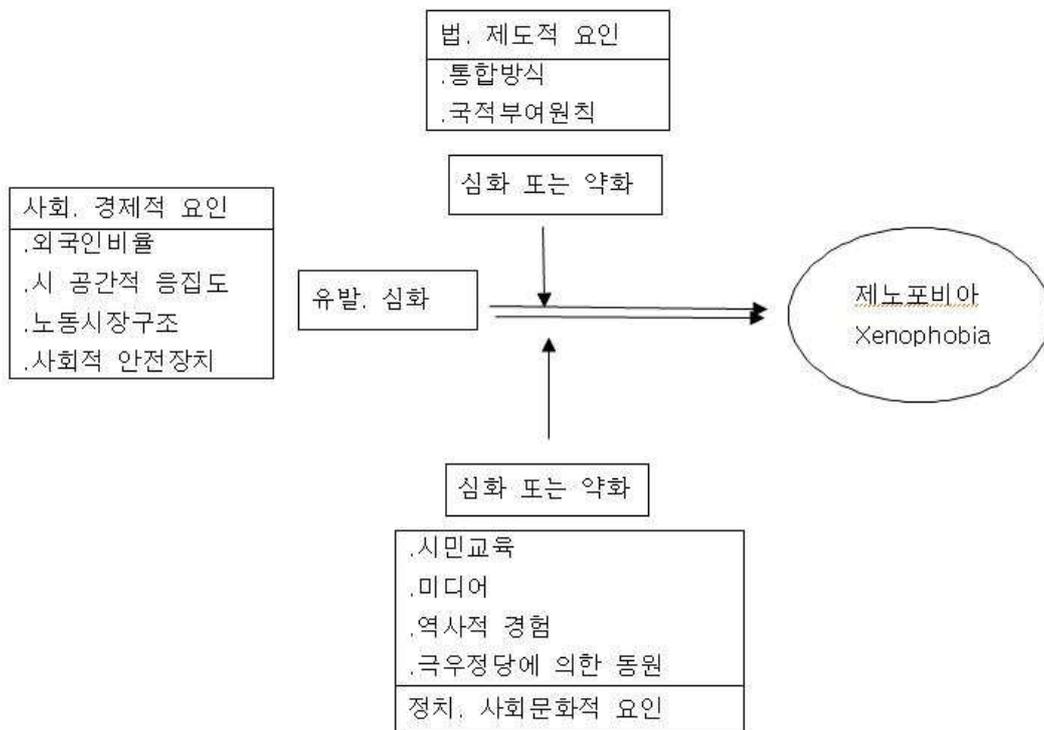
그럼에도 불구하고 외국인 추방운동을 하는 한국인 커뮤니티 단체들은 그들 사이트에 언제나 이주남성들로부터 성적 위협을 당하고 있는 한국여성들의 피해 사례만을 부각시키기에 급급하다. 이러한 한국인 이중잣대는 마치 한국남성이 한국여성을 보호하는 가부장적 역할을 자신들에게 부여하고 있는 듯이 보인다. 그러나 그 기저에는 제노포비아적인 의식이 지배하고 있는 부분이 많다고 봐야할 것이다. 더럽고 열등한 인종으로서 이주자들이 고결하고 순결한 한국의 누이를 넘보지 못하게 해야 한다는 인종적 차별의식이 지배하고 있는 것이다.

## 나가며

이렇듯 정책의 집행자인 정부와 공공기관의 공무원들 그리고 일상에서 관계에 영향을 미치는 한국인들의 의식에 내재해 있는 인종주의와 제노포비아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김세균은 제노포비아에 대한 요인별 영향관계를 그림으로 나타낸바 있다. 아래의 그림에서 볼 수 있듯이 앞서 이야기한 사례들을 정리해 보면 첫째 사회 경제적 요인으로서 지속적으로 유입되는 외국인 인력과 이드르이 장기적인 체류 및 정주화가 특정도시나 지역에 편중해 집단적으로 거주하는 공간적 측면과 밀접한 연관이 있다. 따라서 이러한 공간에서 종교를 포함한 문화적이고 인종적인 차이에 대한 자국민의 인지가 점차 강화되어 ‘우리’라는 동질성과 ‘그들’이라는 이질성으로 이분법적 구별을 통해 차별성을 강조함으로써 이방인에 대한 배타성을 강화해 제노포비아를 유발시킨다고 봐야 한다. 따라서 현재의 다문화적인 의식이 포장하고 있는 다름을 관용으로 포용한다는 퓌레랑스의 레토릭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지점(웬디 브라운, 2009)이라는 것을 지적해두고 싶다. 관용은 문제해결이 아니라 문제의 방치일 뿐이다.

두 번째로는 법 제도적 요인으로서 다문화주의를 표방하면서도 차별배제 쪽으로 기울고 있는 정책의 한계점이다. 이는 이주노동자를 3D업종의 노동시장과 같은 특정 경제 영역에만 받아들이고, 복지 혜택, 국적 또는 시민권, 선거권, 피선거권 부여와 같은 사회적, 정치적 영역에는 잘 받아들이지 않는 경우인데 독일과 같은 나라와 우리는 유사하다. 그러면서 한국은 부모가 그 나라 국민인 사람에게 국적을 부여하는 혈통주의 차별배제인 나라이다. 따라서 현재 외국인 주민조례를 통해 이주자들을 주민으로서의 권리를 부여하려는 지방자치단체들의 노력을 좀 더 확장해 적용해 나갈 필요가 있다. 그래서 합법적

(그림 1) 제노포비아에 대한 요인별 영향관계



체류와 불법적 체류에 상관없이 거주원칙에 따른 주민으로서의 권리 확대를 모색해 보는 것이 바람직한 방향이라는 생각이 든다.

세 번째는 정치 사회문화적 요인으로서 정치적인 관점에서 대중매체의 일반적인 기능은 공공성을 창출한다는 데 있다. 동시에 복잡성을 특징으로 하는 현대사회에서 바로 이 '복잡성을 줄여주는' 기능을 하는 대중매체는 한 사회의 특정 담론을 창출하고 그 방향을 제시함으로써 대중적인 교육을 수행하는 것을 중요한 과제로 삼고 있다. 따라서 대중매체를 통한 교육과 더불어 자발적인 단체 등에 의한 민주주의 교육을 수행해야 한다. 뿐만 아니라 유럽의 예에서 볼 수 있듯이 극우 정당들이 정치적인 입장이거나 활동에 따라 제노포비아 현상에 커다란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알 수 있듯이 한국사회내의 인종주의 단체나 보수단체의 활동을 주시하며 감시해야 할 뿐 아니라, 이들이 형성시키고자 하는 담론을 비판해 낼 수 있는 대항담론을 생산해 내야 할 것이다.

## 올바른 차별금지법 제정을 위한 쟁점포럼

마지막으로 이주자들의 증가를 부정적으로 확대 해석하고자 하거나, 한국사회의 편향된 서구적 시각을 수정하여 한국식의 이주자 정책에 대한 대안 모색이 시급하며, 의식수준에서 떨어지는 인권의 감수성과 인종주의와 제노포비아에 대한 인식을 수정해 나갈 수 있는 대중적 캠페인과 교육이 NGO 스스로 먼저 이루어져야 하며, 그것이 정부, 정책, 공공기관, 학교, 대중으로 이어져야 한다고 본다.

올바른 차별금지법 제정을 위한 쟁점포럼

혐오의 정의와 혐오범죄에 대한 해외 사례, 한국사회의 적용에 대한 고민

**혐오범죄를 막는 해외사례  
-스웨덴의 동성애자 혐오범죄 대책을 중심으로-**

박정준 (서울대 서양사학과)

혐오범죄는 근래 등장한 새로운 현상이라기보다는 새로운 개념에 가깝다. 혐오범죄는 피해자의 인종과 성적지향, 젠더, 장애, 종교, 신념에 이데올로기적으로 반감을 품은 자가 자행하는 범죄를 의미한다. 혐오범죄를 정의할 때는 피해자가 느끼는 감정에 섬세하게 귀를 기울이는 것이 중요하다. 무시되기 쉬운 ‘희생자의 내러티브’ 경청은 혐오범죄 수사과정에서 중시되어야 할 원칙 가운데 으뜸이라고 할 수 있다. 일찍이 고프만 *Erving Goffman*은 『오점』(1968) *Stigma*이라는 유명한 저작에서, 좀 더 우월하다고 믿어지는 주류집단의 특성이 충족되지 못하는 사람은 곧 오점을 지닌 열등한 존재로 낙인 찍혀서 차별을 겪는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오점’이라는 것을 모든 이들이 저마다 갖기 마련이므로, 사실상 어느 누구나 잠재적으로 차별과 배제, 박멸의 피해자가 될 수 있다.

‘혐오범죄’라는 단어가 일상에 자연스럽게 스며들지 못한 한국에서는 얼핏 다른 나라들에 비해서 소수자들이 더욱 안전하게 산다고 착각하기 쉽다. 동성애자전용클럽이 방화공격에 불타지도 않고, 오픈리 게이 연예인이 잔인한 육체적 공격을 입지도 않으며, 심지어 동성애자 정치인도 극소수 존재하기 때문이다. 성적소수자들이 비교적 안전하게 살고 있다는 생각은, 한국에서는 차별금지법이 입법되지 않아도 무난하다는 견해로 이어지기 마련이다. 그러나 매스미디어를 접하면 피해자의 인종이나 성적지향, 장애, 트랜스젠더 정체성 및 표현으로 인해 피해를 당하는 사건이 종종 보도된다.

**“내 여친이 트랜스 젠더?” 연인 목 졸라 살해, 2010.05.28**

**인권위, 처음으로 ‘인종차별’ 결정 권고, 프레시안 사회 2010.07.14**

**“동성애 사실을 알리겠다” 협박 성폭행한 40대 ‘쇠고랑’, 뉴시스 사회 2010.06.11**

**동성애 드라마, 국내 기독교계에도 파장, 세계일보 2010.05.25**

**동성애 여고생 협박 성폭행 미수, 연합뉴스 2004.09.09**

이러한 보도는 실제 소수자들이 한국 사회에서 당하는 피해양상 중 빙산의 일각에 지나지 않는다. 소수자의 권리가 제대로 지켜지지 않는 한국에서, 피해자가 법의 보호를 당당하게 요구하는 것은 대단히 힘겨운 투쟁의 과정으로 흐른다. 비교적 인권선진국이라고 일컬어지는 국가에서조차 혐오범죄가 제대로 신고 되지 않고 묻히기 십상인 것은, 여타 범죄에 비해

혐오범죄의 피해자가 자신의 권리를 구제받으며 가해자를 처벌하는 과정이 얼마나 지난하게 힘겨운지를 여실히 드러낸다.

한국의 성적소수자들 중 혐오범죄에서 가장 취약한 청소년/년들에게서는 불용이 가득한 한국사회의 징후를 엿볼 수 있다. 현재 한국의 공교육에서 이루어지는 대부분의 성교육은 성기 중심 정보나 임신에 집중됨으로써, 평등이나 동성애처럼 섹슈얼리티의 함의나 비주류적 관계에 대해서는 거의 언급하지 않는 실정이다. 이와 대조적으로 동성애혐오 발언은 학교현장에서 다양한 주제들에 의해 비일비재하게 언급되면서 잠재적인 혐오범죄의 가해자 및 동조자를 양산하고 있다. 특히 커밍아웃을 감행한 청소년/년 동성애자들과 타의에 의해 아웃팅된 청소년/년들은 상시적으로 혐오범죄 피해를 입으면서, 불안감에서부터 정신적·육체적 고통, 우울증, 집단따돌림을 호소하다가 급기야 자살을 시도하는 경우까지 간혹 생긴다.

학생들이 이러한 피해를 지속적으로 겪을 때 학교현장이 별다른 지원을 제공하지 않는 것과 마찬가지로, 한국사회의 법과 공권력 또한 소수자들에게 그다지 호의적이지 않다. 동성애에 대한 길건 편견과 물성인지적인 시각이 지배적인 수사기관에서, 어떤 피해자도 쉽사리 가해자를 법의 심판에 맡기기 쉽지 않다. 피해자에게 모욕감과 무력감을 안겨주는 습관적인 조사과정과 재판과정의 귀결은, 결국 혐오범죄가 심각한 범죄로 인식되지 않는 세간의 인습을 확산시키면서 유사범죄를 증가시키거나 더욱 대담한 범죄를 추동하게끔 이끈다.

철저하게 억압받아서 침묵에 파묻힌 피해자들의 생생한 사연이 아로새겨질 기회가 있다면, 과연 한국의 혐오범죄 발생률은 이미 심각한 사회문제로 비화한 혐오범죄 문제를 앓고 있는 국가들에 비해서 더욱 안전한 편일까.

이러한 질문 앞에서 긍정적인 답을 내리기에 궁색한 구석이 있다고 보는 필자는, 해외 사례를 통해 우리가 귀감이나 타산지적을 삼아야 할 구체적인 실례를 탐구해보려 한다. 본 글에서 유념해서 살펴볼 스웨덴은 사회문제를 해결하는 세 단계 시스템을 갖추고 있다. 국내외 전문가들에게 연구용역을 의뢰해서 다양한 사회문제들에 대한 정확한 진단과 해결책을 제시하도록 이끈 후, 보고서의 내용을 토대로 정부와 정치인들, 관련 시민단체 활동가나 학계와 힘을 합쳐서 의제화 및 법제화를 이끌어낸다. 마지막으로, 경찰과 검찰, 법원과 집행기관은 새로운 정책이나 법이 일상에서 알맞게 실행될 수 있도록 힘쓴다는 절차를 통해 사회문제를 해결하려 애쓴다.

본 글에서는 스웨덴이 혐오범죄의 심각성을 인식한 후, 국내외 기관에 조사를 의뢰해서 제작한 보고서의 내용을 짚막하게 요약해서 소개하려 한다. 이는 한국사회에서 부상하고 있는 혐오범죄를 분석하는 데 유의미한 독법을 제공해줄 것이다. 둘째는, 스웨덴 의회의 혐오범죄 방지를 위한 법제화 노력과 시민사회운동의 끈질긴 로비 덕택에 채택되고 있는 여러 차별금지 정책들과 소수자 차별 방지 옴부즈맨 제도를 소개할 것이다. 셋째는, 실제 수사현장에서 피해자의 관점에서 피해자를 돕고 신뢰하며 가해자를 엄중하게 처벌하도록 고무된 경찰과 법원이 어떠한 구체적인 노력을 펼치고 있는지 살펴볼 것이다.

스웨덴은 혐오범죄를 해결하는 과정에서, 갈등상황을 피해자와 가해자 사이의 개인적인 문제나 불행으로 축소시키지 않는다. 혐오범죄가 만연한 사회에서는 비주류적 특성을 가진 어느 누구라도 언제든지 혐오범죄의 피해자가 되기 일쑤이며, 사회에 차별과 불안이 도사리고 있을 경우 각 구성원의 안전에서부터 노동생산성, 화합, 산업재해, 자살 등에 악영향을 끼친다는 것을 인식한 결과이다. 차별은 크게 직접적 차별과 간접적 차별로 나뉜다. 이 가운데 직접적 차별이 실제 혐오범죄로 기소되는 경우에 속한다. 직접적 차별의 예들로는, 불공평한 대우, 유사환경에 처한 다른 노동자들에 비해 유난히 불리한 상황에 내몰리는 것,

이러한 차별적 대우가 성(젠더)이나 트랜스젠더 정체성 및 표현, 인종, 종교, 성적지향, 장애에 결부된 경우를 뜻한다.

그러면 스웨덴 법에서 의미하는 ‘불공평하고 공격적인 대우’는 어떤 것일까. 육체적 폭력, 사회적인 배제와 고립 조장, 자의적 모욕과 중상모략, 자의적인 정보(제공) 차단, 자의적으로 희생자를 더욱 어려운 노동조건에 내모는 것, 모든 형태의 희생시키기(예컨대, 성희롱)를 가리킨다. 스웨덴 법에서는 이러한 차별이 발생하는 원인들로, 양질의 정보 부족, 리더십 부족, 문화적 지체, 불확실한 목표, 평등지수의 부족, 조직적 병폐, 주류와는 다른 사람들에 대한 이해부족으로 꼽고 있다. 조직에서 이러한 차별이 지속적으로 벌어지게 되면, 조직의 생산성과 효율성이 급감하며 조직의 목표에 혼선을 빚게 되면서, 조직에 속한 구성원들의 안전의식과 자신감이 떨어지고, 급기야 개인적 안전도 취약해진다. 이러한 차별은 이내 법적인 인권탄압이기에 법적 위반으로 연결된다.

국가 주도의 혐오범죄의 실태에 관한 조사가 실시되지도 않고, 실제 범죄수사과정에서 혐오범죄라는 항목도 부재하며, 경찰들을 대상으로 한 혐오범죄 방지책도 마련되어 있지 않은 한국에서, 스웨덴이 어떻게 혐오범죄를 국가적 차원에서 깊이 있게 관심을 가지며 해결책을 모색하는지 눈여겨보는 것은 우리가 훗날 치러야 할 고민을 줄이는 기회로 이어질 것이다.

## 1. 혐오범죄를 막기 위한 스웨덴의 세 단계 절차

세계에서 가장 발달된 인권정책이 실현되고 있다고 알려진 스웨덴이 ‘인권선진국’으로 우뚝 선 비결은 무엇일까. 스웨덴이 다른 북유럽 국가들이나 네덜란드 등과 더불어 비교적 모범적인 인권 성적을 나타낸 원인들을 크게 세 가지 측면에서 살펴볼 수 있다. 수많은 연구를 통한 적절한 보고서 제작, 민간 부문에서 실시되는 인권교육과 인권유린 감시, 그리고 경찰이나 사법당국의 인권감수성이 뒷받침된 강력하고 효율적인 대응방식에 기반 한다고 볼 수 있다.

스웨덴에서는 국가기관이 대학이나 연구소, 비정부기구 등에 연구 과제를 위탁함으로써 다양한 사안에 관한 체계적인 연구 작업을 활발히 실시하고 있다. 특히 평등이나 소수자의 인권에 관한 보고서가 꾸준히 나오므로써, 진보적인 시각으로 국가가 소수자들의 인권을 드높이는 데 적극적인 역할을 다하고 있다. 이러한 보고서는 영어를 비롯한 주요 언어로 번역되어서 온라인을 통해 무료로 보급됨으로써, 스웨덴의 연구 성과가 외국의 정부나 비정부기구 등에게까지 도움을 주도록 피하고 있다.

두 번째로 ‘옴부즈맨’(ombudsmannen)이라는 단어가 스웨덴에서 유래했다는 사실에서 짐작할 수 있듯이, 다양한 소수자의 인권을 보호하기 위해 옴부즈맨 제도를 널리 활용하고 있다. 인종차별이나 성적지향, 장애, 아동학대 등에 관한 국가 차원의 옴부즈맨 제도가 시행되면서, 사회적 약자들의 인권을 유린하는 행위를 법에 의해 엄중하게 처벌하며, 관련법 제정이나 소수자들을 향한 바람직한 시각을 널리 보급하고 있다. 그리고 스웨덴의 학교들에서는 어린 시절부터 체계적인 인권교육을 시킴으로써, 인권감수성이 타고난 것이 아니라 후천적인 교육으로 끊임없이 길러진다는 점을 설파하고 있다.

세 번째로 스웨덴 경찰 및 사법당국은 스웨덴 안팎에서 최근 급증하고 있는 소수자들에 대한 혐오범죄를 강력히 막으려 힘쓰고 있다. 혐오범죄는 결코 가볍지 않은 사안이기에 가해자는 법에 의해 엄중하게 처벌받고, 피해자는 보상 및 안전을 보장받아야 한다는 점을 피하고 있다.

## 2. 혐오범죄에 대한 연구 작업

스웨덴에서는 혐오범죄가 무엇이고 어떤 원인에 의해서 발생하는지를 정확하게 알아야만 정확한 해결책이 제시될 것이라는 생각으로, 청년들을 대상으로 혐오범죄의 발생 원인을 찾았다. 앞으로 보게 될 자료집은 그 가운데 대표적인 결과물이다. 범죄예방을 위한 스웨덴 국가 위원회(Brottsförebyggande rådet, BRÅ)와 생애사포럼(Forum för levande historia)이 2005년에 공동 발행한 『불관용, 반유대주의, 동성애혐오증, 이슬람혐오증과 청년층 사이의 반이민자경향』<sup>11)</sup>에는 다양한 사안에 관한 청년들의 인권의식을 폭넓게 조사한 결과를 담고 있다. 이 조사는 오늘날 스웨덴 사회에서 소수자로 분류될 성실은 동성애자와 유대인, 무슬림에 관해 스웨덴 젊은이들이 어떻게 생각하는지 사회통계학적인 방식으로 연구하고 있다. 이 조사를 수행한 연구자들은 다양한 사회·문화·경제·인종적 배경을 지닌 10,000여명 이상의 스웨덴 거주 청년들에게 다음 사항에 관한 관용 지수를 물었다.

- 대부분의 유대인들(무슬림/동성애자)은 의심할 여지없이 점잖은 사람들이다.**
- 유대인(무슬림/동성애자)이 옆집에 사는 것이 전적으로 괜찮다.**
- 스웨덴에 거주하는 유대인들(무슬림/동성애자)은 시너고그(회교사원/동성애자 전용 클럽)를 지을 권리가 있다.**
- 스웨덴에 너무나 많은 유대인들(무슬림/동성애자)이 거주한다.**
- 유대인들(무슬림/동성애자)을 신뢰할 수 없다.**
- 유대인들(무슬림/동성애자)이 참정권을 가져서는 안 된다.**
- 모든 개인은 인간으로서 동등한 가치를 지닌다.**
- 당신은 상대방이 어느 나라 출신인지에 상관없이 친구를 사귄다.**
- 스웨덴은 난민수용정책을 지속해야 한다.**
- 대부분의 중동 출신의 이민자들은 법을 준수하는 시민들이다.**
- 텔레비전 앵커 또한 (종교적인) 두건을 착용할 권리를 갖는다.**
- 동성애자도 아이를 입양할 권리를 가져야 한다.**
- ‘유대인들은 구두쇠’라는 주장에는 진실이 담겨 있다.**
- 동성애는 질병이다.**
- 대부분의 무슬림들은 복지제도에 의존해 살아간다.**
- 유대인들은 오늘날 막대한 국제적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
- 유대인 박해와 나치에 관한 담론이 지나치게 널리 있다.**
- 대부분의 에이즈 감염인들은 지저분한 생활습관에 대한 징벌로 병에 걸렸다.**
- 유럽지역 밖의 이민자들을 스웨덴 밖으로 추방해야 마땅하다.**
- 다른 인종의 사람들끼리 아이를 낳는 것에 반대한다.**

조사결과는 다양한 항목으로 분류되었다. 짧막하게 요약하자면, 남자에 비해 여자일수록, 부모 모두 스웨덴에서 태어난 젊은이들에 비해 부모 중 한 명 이상이 외국에서 출생한 커플의 자녀일수록, 부모들의 사회경제적 지위가 높을수록, 무신론자일수록, 부모와의 관계가 화목할수록, 또래집단과 일탈행위를 적게 저지르는 청년들일수록 ‘관용’ 지수가 상대적으로

11) Intolerance Antisemitism, homophobic, islamophobic and anti-immigrant tendencies among young people Jonas Ring et al, Intolerance Antisemitism, homophobic, islamophobic and anti-immigrant tendencies among young people, Stockholm: Brottsförebyggande rådet(BRÅ), 2005.

높게 나왔다. 반면, 부모 모두 스웨덴에서 탄생한 커플들의 자식들로서, 저임금 노동자계급 출신으로서 화목하지 않은 가구에서 자라는 소년들이 관용지수가 가장 낮은 그룹으로 조사되었다. 더불어, 이 조사에서는 관용지수가 모든 항목에서 일치하지 않는다는 점도 밝혀냈다. 예컨대, 이민자 출신의 청년들은 외국인 혐오와 인종주의에서는 관용지수가 높게 나온 반면, 동성애에 대해서는 불관용 지수가 높게 나왔다.

사회·문화·경제적 지위가 높은 청년들에게서 상대방을 배려하고 존중하는 관용지수가 높게 나온 것에 저자들은 몇 가지 원인을 찾고 있다. 이들은 반대 부류에 비해서, 상급학교 진학 비율, 더욱 우수한 학교성적 및 무난한 학교생활을 보내고 있었으며, 박물관 견학이나 도서관 이용 같은 문화생활에 시간을 할애하는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았다. 또한, 이들은 대개 부모와 격의 없이 고민을 나누면서 소수자에 관한 균형 잡힌 정보를 접하는 비율이 높아지면서 편견 어린 시선을 덜 형성하게 된다고 파악한 것이다.<sup>12)</sup>

반면, 반대편의 경우 또래집단들과 술집을 드나들며 인종주의와 여성비하, 남성우월주의에 대한 담론을 공유하며, 학교성적은 일반적으로 하위권에 속해서 미래에 관해 절망적인 의기소침함이 다분한 경우가 다반사라는 것이다. 뿐만 아니라, 이들은 불관용적인 사회정치적 의견뿐만 아니라, 우울증이나 충동적인 기질을 동반한 심리적인 문제를 앓는 경우가 빈번하다고 보고했다.

### 3. 차별 감시 기구로서의 옴부즈맨

스웨덴이 국가 차원에서 방대한 양의 조사를 수행한 데는, 실태를 정확하게 파악함으로써 적절한 대책이 세워질 수 있다는 믿음에서 비롯된다. 스웨덴 정부는 이를 통해 청년들이 관용지수를 끌어올려서 창궐하고 있는 혐오범죄에 썩기를 막도록 주력하고 있다.

오늘날 스웨덴에서는 전반적으로 폭력범죄가 감소하고 있는 현상과 대조적으로, 동성애자에 관한 혐오범죄만은 증가 일로에 있어서 주목을 요하고 있다. 스웨덴에서는 매년 약 4십만 건의 혐오범죄가 신고되고 있다. 2007년에는 동성애자를 겨냥한 혐오범죄가 총 725건 보고되었다. 이 수치는 2006년에 비해 6%나 증가한 수치다. 동성애 혐오범죄 중 1/4에서 폭력이 동반되고 있다. 스웨덴에서는 혐오범죄인지 여부를 판별하는 데 있어 이데올로기에서 동기가 부여된 범죄(ideologically motivated crimes)인지를 중요한 잣대로 삼는다. 15세 이하의 혐오범죄를 저질렀다고 하더라도 기소되지 않는 것을 포함하여, 신고된 혐오범죄 가운데 73% 이상은 기소되지 않고 종결된다. 혐오범죄의 범위 안에는 ① 직접적인 육체적 공격, ② 악의적 낙서, ③ 미디어와 서신, 문자메시지, 전화, 팩스를 통한 괴롭힘 등을 아우른다.

스웨덴에서는 매년 혐오범죄 신고비율이 증가하고 있다. 신고된 내용을 보면, 외국인혐오와 인종차별이 가장 빈번하게 발생하는 범죄였으며, 뒤이어 동성애혐오(20%), 무슬림혐오(6%), 유대인혐오(3%)가 뒤를 따랐다. 동성애자를 겨냥한 범죄 피해자들 중에서는 남자가 여자보다 훨씬 많았다. 실제 소수자들이 당하는 피해상황 중에서 협박과 희롱이 가장 흔했으며(35%), 이밖에 상해(21%), 중상모략(17%), 국가/인종그룹에 대한 비방(12%), 경멸적 낙서(10%) 순이었다. 유의할 점은 전체 혐오범죄 중 절반 이상의 사건에서 직간접적인 폭

12) 특히 나이가 들고 고학력이며 무신론자인 여성들일수록 주변의 소수자들에 대해 높은 관용의 정서를 표현했다. 이들은 소수자들이 옆집에 살아도 무방하다고 말했으며, 동성애자의 아이입양에 대해서도 관용적인 태도를 보여주었다.

력이 사용되었다는 점이다. 혐오범죄는 거의 모든 환경에서 상시적으로 일어난다고 봐야 할 형국이었다. 특히 거리와 시장, 공원에서 가장 흔히 발생하고 있었다. 혐오범죄가 집(16%)이나 근무지(16%), 학교(9%)에서도 자주 터지는 것처럼, 1/3의 사례는 가해자와 피해자가 일정 수준 이상 면식이 있는 경우였고, 전체적으로는 가해자가 생면부지의 사람(55%)인 경우가 가장 흔했다.

아래 신문기사 표제들은 실제 스웨덴 언론에 나온 동성애자들을 겨냥한 혐오범죄의 사건들 중 일부이다. 이 표제들을 보면 스웨덴에서 혐오범죄가 실제 기소와 판결로 이어지고 있으며, 직접적인 피해뿐만 아니라 혐오범죄 내용을 담은 유인물 배포나 반동성애 혐오범죄를 자극하는 서신만으로도 법적인 처벌대상이 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혐오범죄 살해자 크리스티안 브레딘(Kristian Bredin)이 무기징역형을 상고하다. (2008년 8월 11일)**

**동성애자들이 세 명의 소년들에게 공격당하다. (2008년 8월 3일)**

**혐오범죄가 유로프라이드 개막행사를 방해하다. (2008년 7월 28일)**

**과거 혐오범죄 살인자 카를 스벤손(Karl Svensson)이 카롤린스카 의대에서 퇴학당하다. (2008년 1월 24일)**

**잔악무도한 게이 혐오공격 혐의로 한 남자가 체포되다. (2008년 1월 11일)**

**축구선수 글렌 히센(Glenn Hysén)이 호모포비아라는 점을 부인하다. (2007년 8월 2일)**

**신나치주의자가 동성애자 공격으로 기소되다. (2007년 8월 11일)**

**혐오범죄 메일을 써서 해고된 경찰이 복직을 요구하다. (2007년 1월 17일)**

**극우단체그룹이 혐오범죄 유인물 배포로 기소되다. (2006년 7월 6일)**

**동성애자를 겨냥한 혐오범죄가 증가하고 있다. (2005년 11월 29일)**

**오께 그린(Åke Green) 목사가 혐오범죄 설교 혐의로 관해 무죄를 선고받다. (2005년 11월 29일)<sup>13)</sup>**

위의 사건들 가운데 혐오범죄를 부화뇌동할 수 있는 메일을 발송한 경찰은, 경찰직에서 해고됨과 동시에 12만 크루나(한화 19,000,000원)의 벌금을 내야 했다. 그리고 예배 중에 연거푸 동성애 혐오 조장 설교를 퍼부은 목사는 오랜 법정다툼 끝에 무죄 판결을 받았지만, 몇 년 동안 동성애자운동 단체의 집중적인 항의에 힘입어 부분적으로 책임을 인정하기도 하였다.

‘성적지향에 기반 한 차별에 반하는 옴부즈맨(HomO)’은 1999년 5월 1일에 설립된 후 의장인 한스 이페르베리(Hans Ytterberg)를 비롯해 불과 8명의 인력으로 운영되던 소규모 국가조직이었다. 하지만 2009년 1월 1일부터 이 기구는 평등 옴부즈맨(Diskrimineringsombudsmannen)으로 통합되었다. 그동안 HomO는 스웨덴의 대학들을 주기적으로 방문해서 젊은이들이 동성애에 관하여 올바른 시각을 고취할 수 있도록 교육을 실시하였으며, 가족법 개정이나 동성애자 젊은이들의 고민을 심층적으로 상담했다. 이외에도 스웨덴 전역에서 벌어지는 성적지향에 기반 한 차별 및 폭력을 접수해서, 중차대한 사례는 관련당국에 수사를 요구함으로써 혐오범죄가 확산되는 것을 막는 데 주력했다. 예컨대, 2003년에 스톡홀름의 한 카페에서 키스를 했다는 이유로 즉시 퇴장을 명령한 주인의 처사가 차별적이라고 판단한 레즈비언 커플은 HomO에 진정서를 냈다. HomO의 개입 덕분에 카페 주인은 레즈비언 커플에게 13,000 유로(한화 2,200만 원가량)를 배상해야 했다. 또한,

13) 위의 기사들은 [www.thelocal.se](http://www.thelocal.se)와 [www.sr.se](http://www.sr.se)(The Swedish Radio)에서 검색하였다.

HomO는 동성애 커플이 이성애 부부에 준하는 권리를 보장받는 시민동반자법이 채택되는데 기여하였으며, 2005년 7월 1일부터는 레즈비언 커플에게도 정자를 제공하는 것을 법률적으로 허용하는 데 일조했다. 그리고 HomO는 종교 교육이나 미디어에서 동성애(자)를 부정적으로 재현함으로써 증오를 야기하는 문제를 지적하며, 교과서 내용 개정이나 미디어의 보도태도를 개선할 것을 반복해서 권고했다. HomO는 크게 ① 대학에서 동성애 교육, ② 동성애 청년 지원, ③ 가족법 개정, ④ 법치주의 강화에 힘을 썼다고 평가된다.

#### 4. 혐오범죄를 막는 일등공신 경찰

스웨덴 경찰(Rikspolisstyrelsen)은 2005년에 「동성애혐오 범죄의 희생자 지원향상을 위한 안내자료」<sup>14)</sup>를 발간했다. 이러한 자료집이 마침내 출간된 데는 스웨덴 국가안보기관(SÄPO)이 발표한 혐오범죄 통계가 든든한 배경이 되었다. 스웨덴 경찰은 1999년부터 피해자들의 관점에서 사건수사에 임하는 수사방식으로 선회했다. 사건조사과정에서 가해자에게 더욱 집중된 결과 다양한 종류의 피해상황이 야기하는 문제가 간과되기 십상이었고, 성희롱이나 차별 문제처럼 감수성이 작용하는 폭력상황에 관한 문제에서 소극적으로 일관하였기 때문이다.

동성애혐오범죄를 ‘이성애규범적 범죄’(heteronormative crime)라고도 부른다. 스웨덴에서는 사회적 약자들 가운데 그나마 주목을 받는 여성들이나 장애인, 아동들보다 더욱 취약한 소수자들이 있다고 통찰한 후, 동성애자나 트랜스젠더, 난민 등에 대한 관심을 늘리는데 역점을 두고 있다. 또한, 스웨덴 경찰은 구체적으로 혐오범죄를 다루는 경찰들이 숙지해야 할 점들을 주시시켰다. ① 경찰조직의 모든 이들은 경멸적이고 편견에 가득 찬 발언을 하는 것을 금한다. ② 혐오범죄를 차단하는 훈련을 이수하면서, 관련 범죄들에 전문적으로 대응하는 적절한 행동을 취한다.<sup>15)</sup> ③ 혐오범죄를 적절하게 수사해서 문서화한다. ④ 경찰 및 관련 공무원들은 보고서를 작성함으로써 유사한 사건이 재발되지 않도록 막는 역할을 맡는다. ⑤ 다양성과 관용을 일깨우기 위해 감수성을 기를 것을 권고하고 있다. 스웨덴 경찰은 2010년에 「차별 혹은 괴롭힘과 여타 불공평하고 공격적인 대우의 종류들」 *Discrimination or Harassment and other kinds of unfair or offensive treatment*을 출간하면서 구체적으로 경찰이 혐오범죄를 막기 위하여 취해야 할 복무수칙을 한 단계 더 업데이트했다.<sup>16)</sup> 뿐만 아니라, 짧은 시간에 쉽게 읽을 수 있는 보고서 「너 자신으로 존재하

14) Karl-Åke Pettersson, et al, *A Guide for the Improvement of Support to Victims of Homophobic Crime*, Stockholm ; Rikspolisstyrelsen/Swedish National Police Board, 2005.

15) 스웨덴 경찰에서는 모든 경찰관에게 지위고하와 젠더를 불문하고 차별과 괴롭힘, 여타 불공평하고 공격적인 대우에 관해 교육을 받아야 한다고 명했다. 스웨덴에서는 경찰이 적어도 1년에 1회 이상 사회적 소통과 사회적 노동 환경에 대해서 토론을 벌일 것도 의무화했다.

16) 차별 혹은 괴롭힘과 여타 불공평하고 공격적인 대우의 종류들(Discrimination or Harassment and other kinds of unfair or offensive treatment)을 방지하기 위한 국가정책과 가이드라인들

1. 경찰은 어떠한 형태의 차별과 괴롭힘, 여타 불공평하고 공격적인 대우를 용인하지 않는다.
2. 모든 이들은 경찰의 핵심가치(core value)에 따라서 (공권력에 의해) 존엄하게 대우 받아야 한다.
3. 경찰은 훈련과 정보를 통하여 차별과 괴롭힘, 여타 불공평하고 공격적인 대우를 예방하며, 좋은 노동조건과 열린 분위기를 창조하는 노동현장을 만드는 데 기여한다.
4. 경찰은 책임자로서 만일 누군가가 차별을 당할 경우 조치를 취해야 할 의무를 지닌다. Polisen, *Discrimination or Harassment and other kinds of unfair or offensive treatment*, Stockholm: Polisen, 2010.

는 것이 범죄는 아니야」 *Being yourself is not a crime*를 발행하면서, 단번에 메시지를 받아들일 수 있는 짧은 문장으로 의식개선을 꾀했다. 예를 들어서, "Bullying is a crime. Violence can effect anyone"(괴롭히는 것은 범죄야. 폭력은 누구나에게 영향을 끼칠 수 있어.)등의 문구를 보급시키면서 차별이 가져오는 부정적 과장을 알리기 위해 부신했다.

스웨덴 경찰이 혐오범죄를 중차대하게 다루는 으뜸 이유들로는, 혐오범죄는 여타 범죄와 달리 피해자들뿐만 아니라 사회 전체에 악영향을 미치는 과급효과가 크다는 인식에 닿아 있다. 게다가, 혐오범죄의 피해자들은 극심한 트라우마를 입어서 공포에 질리므로 만성적인 후유증을 겪기 십상이며, 피해자들의 가족 및 지인들까지 무력감과 지속적인 불안을 느끼게 된다는 것이다. 그리고 혐오범죄가 지역사회에서 빈번하게 발생할 때, 다른 종류의 범죄도 동반해서 증가할 수 있다는 연관관계도 보고되고 있다.

혐오범죄가 제대로 신고되지 않는 주된 원인들로는, 또 다시 희생자로 전락하거나 보복을 당할까 하는 두려움 및 자신들의 프라이버시가 아웃팅될 것에 대한 공포, 경찰에 대한 불신에서 비롯된 수사당국의 엄중한 사건 조사의지에 대한 회의, 동성애자를 흔히 에이즈 감염인과 등치시키는 편견, 그리고 스웨덴 시민이 아닌 경우 거주허가를 받는 데 지장을 받을까 하는 염려로 인해 사건에 소극적으로 임하게 된다는 것이다. 경찰은 사건 신고를 늘리기 위해, ① 가능한 한 명의 경찰관이 개별 사건을 지속적으로 담당하며, ② 희생자의 신분은 최대한 비밀에 붙이고, ③ 희생자 및 증인들이 수사과정 중에 당할 수 있는 다양한 상황에 대해 미리 주지시켜야 하며, 특히 미디어가 동성애혐오적인 관점으로 보도할 수 있음을 알리고, ④ 희생자들이 지역에 위치한 쉼터에서 일시적으로 보호받을 수 있다는 점도 알리며, ⑤ 조서를 꼼꼼하게 작성함으로써 해당범죄가 혐오범죄인지 여부를 판단하는 데 유효한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고 압축했다.

이밖에 경찰은 수사 과정 중에 ① 급조하듯이 속전속결로 진행하는 수사관행이나, ② 경찰이 느끼는 개인적인 감정을 희생자들에게 피력하는 것이나, ③ 희생자의 행동이나 사생활을 비난하고, ④ 사건을 자의적으로 축소하는 것을 반드시 금해야 한다고 일침을 가했다.

스웨덴은 위에서 살펴본 대로, 동성애자를 차별하지 말고 이웃으로 수용해야 한다는 막연한 탁상공론에만 머물지 않는다. 추상적이고 막연한 해결책 남발에 그친다면 갈수록 다원화된 사회에서 소수자들이 겪는 차별과 편견은 갈수록 근절되기 힘들어진다. 앞서 본 바와 같이, 스웨덴에서는 체계적인 연구 작업을 통한 실태파악 및 대책마련, 민간 및 공공기관에서 동성애 차별 접수 및 동성애자 관련 정책 및 법 개정, 나아가 공권력이 동성애자들의 안전과 인권을 드높일 수 있도록 집행되도록 유도하고 있다.

## 5. 스웨덴의 혐오범죄 접근법이 주는 시사점

혐오범죄에 접근하는 스웨덴의 움직임은 몇 년 전 차별금지법 제정 과정에서, 극단적인 동성애 혐오에 기반 한 기독교원리주의자들의 집요한 로비로 불발에 그친 동성애자 차별금지 조항을 반추하며, 한국이 선진국을 지향한다면 어디에서부터 고민을 해야 하는가에 대한 문제제기를 이끌고 있다. 흔히들 가장 취약한 계층의 인권을 관찰하면 그 사회의 인권수준 및 선진국 여부를 가늠할 수 있다는 주장이 있다. 이러한 구조적인 잣대 앞에서, 한국이 과연 어느 정도 수준에 머물고 있는지 의아하다.

한국사회에서 아직 명시적인 ‘동성애혐오범죄’가 온전히 관찰되지 않는 것도, 역설적으로 아직 한국에서는 ‘혐오범죄’ 자체에 대한 올바른 의미파악조차 안 된 형국인 데다, 여전히

동성애자들이 보이지 않는 배제의 단계에서 자신들의 정체성을 당당히 주장할 수 없다는 점도 인지해야 한다. 한국의 언론에서 ‘혐오범죄’라는 꼬리표로 달고 등장하는 사건들은 천편 일률적으로 한국 밖에서 일어난 것들뿐이다. 또한, 이러한 외신들은 심중팔구 한국인들이 인종 때문에 피해자가 되어서 우리에게 중요성이 부각되는 사건들이라는 점은 시사해주는 바가 크다.

스웨덴처럼 성적소수자를 타깃으로 삼은 위법행위에 대해 명시적으로 ‘혐오범죄’로 처벌하는 국가들에서는, 공통적으로 단순한 기회주의적 범죄를 굳이 혐오범죄라고 부르는 것이 문제를 더욱 키운다는 주장이 제기되었다. 그러나 단지 피해자의 인종이나 성적지향, 종교, 장애로 인해 촉발되는 범죄가 전 세계에서 익숙하게 벌어지는 상황에서, 혐오범죄 금지법 제정이 범죄를 더욱 증가시킨다는 주장에는 어폐가 있어 보인다.

머지않아 한국사회에서 혐오범죄가 급증할 때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 한국정부는 스웨덴의 사례를 귀감 삼아야 할 것이다. 이미 한국사회에서 낮은 여성 혐오와 빈국 출신의 이주인에 대한 거침없는 인종차별, 군미필자 및 양심적 병역거부자에 대한 극심하고 케케묵은 차별과 혐오의 시선이, 동성애자와 다문화가구 출신의 사람들이나 탈북자에게 향할 때 그 폭력의 수준은 결코 가볍지 않을 것이며 쉽사리 해결책을 찾기도 어려울 것이다. 바로 지금 혐오범죄에 대한 관심을 기울여야 할 시기이다.

## 혐오범죄 관련법의 제도화 가능성과 의미

오가람 (반차별공동행동/친구사이)

### I. 들어가며

이 발제문은 혐오범죄에 대한 기본적인 논의를 소개하고, 한국에서 혐오범죄 관련법의 제도화 가능성을 타진해 보며 제도화의 의미를 짚어보기 위한 것이다. 혐오범죄를 어떻게 규정할 수 있을지, 혐오범죄의 특징으로 언급되는 것은 무엇인지, 혐오범죄와 혐오범죄가 아닌 범죄의 차이는 무엇인지, 어떠한 방식으로 혐오범죄와 관련한 법제도가 만들어질 수 있는지, 제도화를 통해 무엇을 얻을 수 있고 또 어떤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지를 기초적인 수준에서 살펴보고자 한다.

혐오범죄 관련법은 형법과 관련한 것으로 차별금지법과 맥락을 다소 달리한다. 그러나 혐오범죄를 이 포럼에서 중요하게 다루게 된 이유는, 혐오범죄 역시도 하나의 차별의 형태라는 점에서 차별금지법과의 연관성을 찾기 위한 것이라고 생각된다. 혐오에 기반하여 사회적 소수자에게 물리적, 정신적 폭력을 가하고 그가 가진 물건을 빼앗고 파괴하는 등의 행위는 소수자에 대한 가장 심각하고 직접적인 인권침해임에 분명하다. 소수자에 대한 인권침해가 일종의 차별로 파악된다는 점에서 혐오범죄는 차별금지의 맥락에서 중요한 문제라고 할 것이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혐오범죄가 꼭 소수자에게만 향한 것이 아닐 수도 있고, 무엇보다 혐오범죄와 관련한 논의가 직접적으로 국가의 형벌권 발동과 관계된다는 점에서 다소 접근하기 조심스러운 데가 있다는 점을 염두에 둘 필요가 있다고 생각된다.

2000년대 들어 한국에서도 법학자들이 혐오범죄에 대한 문헌들을 간간히 소개하고 있지만, 아직 혐오범죄와 관련한 문제는 혐오범죄 피해집단 내에서도, 또 학계에서도 중요한 문제로 본격적으로 다루어지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 그만큼 우리는 혐오범죄와 관련한 법제도를 구축하는 것에 대해 많은 정보를 가지고 있지 않은 듯하다. 반면 미국, 유럽 등지에서는 혐오범죄가 중요한 사회적인 문제로 등장하여 그에 대한 제도적 논의가 활발하고, 이미 혐오범죄와 관련한 법제도들이 이미 수십 년 전부터 갖추어져 있다. 이러한 차이는 사회 내에서 소수자 집단이 가지는 역사적,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경험과 맥락이 다르다는 점에서 이해될 수 있을 것이다. 이것이 혐오범죄의 강도와 광범위성(또는 현실에 대한 인식 또는 인식률)에 영향을 미치고 있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한국의 맥락에서 혐오범죄가 어떻게 이해되고 논의될 수 있을지 역시 중요한 문

제로 부각된다. 한국 사회에서 어떤 행위가 혐오범죄라는 개념으로 본격적으로 등장하지 않았던 이유는 무엇인지, 한편 혐오범죄라는 개념이 한국 사회에서 반드시 필요한 것인지, 혐오범죄가 아닌 다른 개념이 필요한 것은 아닌지가 문제될 수 있다.

오늘 포럼이 혐오범죄에 대해 궁금증과 의문을 가지고 차별금지법 또는 ‘차별’과의 관련성을 생각하며 반차별공동행동에서 공개적으로 첫 논의를 하는 것이므로, 주로 이제까지 알려진 내용들을 정리해 보고, 앞으로 생각해야 할 부분들을 점검하는 수준에서 이 글의 논의는 이루어질 것이다.

## II. 혐오범죄란 무엇인가

### 1. 혐오범죄의 개념

혐오 또는 증오범죄(hate crime), 편견범죄(bias crime), 편견에 동기화된 범죄(bias-motivated crime)의 개념은 한 사회 내에서 인종이나 민족 간의 갈등과 증오심, 혐오감에 기반한 범죄 행위에서 부각된 것이다.<sup>17)</sup> 이러한 개념은 점차 확대되어, 미국 연방혐오범죄통계법(Federal Hate Crime Statistics Act) 등에 의해 인종, 종교, 성적 지향, 장애, 계급, 인종, 출신국가, 나이, 젠더, 성별 정체성, 정치적 단체에의 가입 등에 대한 혐오 또는 편견이 범죄 동기의 전부 또는 일부로 작용한 범죄로 규정되기에 이르렀다.<sup>18)</sup>

이에 따르면 (1) 특정한 사회적 집단에 속하거나 특정한 정체성 또는 조건을 가지고 있는 (또는 그렇게 인식되는) 사람을 대상으로 (2) 증오, 편견, 혐오가 동기로 작용하여 저질러진 범죄로서, (3) 특히 사회적 소수자 집단이 주로 그 대상이 되는 범죄로 혐오범죄의 범위를 좁힐 수 있다.

한편, 개념과 관련하여 용어의 문제를 짚고 넘어가지 않을 수 없다. 한국어로 ‘증오범죄’라고 표현할 것인가, ‘혐오범죄’라고 표현할 것인가, 아니면 ‘편견범죄’라는 용어를 사용할 것인가? 주로 소수자라는 이유로 가하는 범죄행위의 동기는 혐오, 멸시, 증오, 비하 등을 아우르는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이러한 동기들은 편견에 의해 형성되고 강화되는 것도 사실이다. 다른 한편 혐오범죄는 반드시 소수자만이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니고 오히려 그 반대의 경우 역시 상정될 수 있으며 실제로 보고되고 있다. 이런 것들을 아울러 고려했을 때 ‘혐오범죄’라는 표현이 현재로서는 가장 적절하다고 판단된다. ‘증오’가 ‘몹시 미워한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반면 ‘혐오’는 한자 그대로 ‘싫어하고 미워함’이라는 의미를 가지므로, ‘증오’보다 의미의 정도(미워함의 정도)는 작아도 그 의미의 폭이 보다 넓어서 이러한 유형의 범죄로 생각되는 행위들을 보다 잘 포괄할 수 있기 때문이다. 뿐만 아니라 ‘증오’보다는 ‘혐오’라는 용어가 주로 소수자에 대한 범죄라는 권력적 속성을 보다 잘 드러내는 것으로 보이기도 한다. ‘편견 범죄’나 ‘편견에 동기화된 범죄’는, 여기서 말하는 ‘편견’이 ‘특정 집단에 대한 편견’인데도 그 범위를 넘어서는 것으로 보이므로 쉽게 개념을 파악하기가 어렵다는 점에서 사용하기가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된다. 그런 점에서 최근 학계에서 'hate crime'을 대부분 ‘증오범죄’라고 번역하고 있는 점에 대해서는 문제제기할 필요가 있다. 다만 맹목적인 혐오

17) 최웅렬·정승민, 「미국에서의 인종차별에 의한 혐오범죄에 관한 연구」, 《피해자학연구》 제13권 제2호, 한국피해자학회, 2005.10., 362쪽.

18) 이동명·노상욱, 「미국의 증오범죄에 관한 연구」, 《법학연구》 제31집, 한국법학회, 2008. 8., 369쪽 ; [http://en.wikipedia.org/wiki/Hate\\_crime](http://en.wikipedia.org/wiki/Hate_crime)

범죄의 경우 증오범죄라는 용어가 보다 적절해 보이는 아쉬움도 있다.

## 2. 혐오범죄의 유형

### (1) 규정형태에 따른 유형<sup>19)</sup>

혐오범죄는 법제도의 측면에서 보면 ‘순수한 혐오범죄’와 ‘가중처벌 하는 것’으로 나눌 수 있다.

‘순수한 혐오범죄’는 KKK의 ‘십자가 불태우기(cross burning)’와 같이 특정한 행위를 혐오범죄로 규정한 것으로서, 일반적으로는 범죄가 되지 않더라도 특정 집단에 대한 증오, 편견, 혐오에 의해 저질러진 경우 혐오범죄로서 처벌의 대상이 되는 것을 말한다.

이와 달리 가중처벌하는 유형은 기존에 범죄화된 행위(예를 들어 살인, 폭행, 손괴, 강간 등)를 혐오에 의해 동기화되어 한 경우 혐오범죄로 규정하여, 혐오에 의하지 않은 범죄에 비해 가중처벌하는 형태를 의미한다.

### (2) 동기에 따른 유형<sup>20)</sup>

동기별로는 스틸, 방어, 보복, 사명감 및 의무에 따른 유형으로 구분된다.

1) 스틸에 의한 혐오범죄는 ‘흥미를 추구하고 권력을 가지는’ 형태로서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는데, 청년들의 동성애에 대한 혐오범죄에서 많이 나타난다고 한다.

2) 방어에 의한 혐오범죄는 자신들의 재산, 세력, 지역사회를 방어한다는 명목으로 저지르는 것으로서, 백인 거주지역에서 소수 인종들을 살 가치가 없는 존재로서 공격하는 형태가 그 예라고 한다.

3) 보복에 의한 혐오범죄는 과거의 피해를 보복하기 위한 것으로서, 피해에 대한 소문을 유포시키고 그 소문의 진위가 밝혀지기 전에 가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진다고 한다.

4) ‘임무수행’으로서의 혐오범죄는 자신의 집단 내에서 사명감을 가진 자들이 ‘세계의 악을 제거한다’는 명목으로 악 또는 열등하다고 간주되는 자들을 상대로 이루어지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 범죄자들은 혐오범죄를 저지르는 것은 임무를 수행한 것이라고 믿는다. 실추된 명예회복을 위한 혐오범죄 역시 이 유형에 속한다고 한다.

## 3. 혐오범죄의 특징

혐오범죄에 대한 일련의 사회학적, 범죄학적 연구는 혐오범죄가 다른 범죄와 구분되는 성격을 지니고 있음을 보여준다고 한다.<sup>21)</sup> 이러한 혐오범죄의 특징들은 혐오범죄를 다른 범죄와 구분하는 데 있어서 필요할 뿐만 아니라, 혐오범죄가 왜 다른 범죄에 비해 처벌의 정도와 가능성이 더 큰지를 설명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

(1) 혐오범죄는 혐오범죄가 아닌 범죄에 비해 더욱 폭력적인 경향을 지닌다. 이것은 두 가지 의미에서 그러한데, 첫째, 혐오범죄는 다른 범죄에 비해 폭행을 수반하는 경우가 많고, 둘째, 폭행의 강도에 있어서도 혐오에 의하지 않은 폭행보다 상해를 입힐 가능성 2~3배 높

19) F. M. Lawrence, *The Punishment of Hate: Toward a Normative Theory of Bias-Motivated Crimes*, Michigan Law Review, The George Washington University Law School, 1994, 9쪽.

20) 최응렬·정승민, 앞의 논문, 369-370쪽.

21) Lawrence, 앞의 논문, 30쪽.

다.<sup>22)</sup>

(2) 혐오범죄의 피해자는 대체가능성이 있다. 즉 가해자는 특정 집단에 속해 있다는 이유만으로 피해자를 노리는 경우가 많으므로, 가해자와 피해자는 서로 모르는 사람인 때가 많고 그 집단에 속한 사람이라면 누구든지 표적이 될 수 있다.<sup>23)</sup>

(3) 혐오범죄의 가해자와 피해자는 ‘상징적 지위’를 가진다. 가해자가 보기에 피해자는 열등한 지위에 놓여 있는 자로서 그러한 피해자의 지위가 가해자를 ‘자극’한다. 이와 반대로 표적집단의 구성원이 가해집단의 구성원으로 인식되는 자에 대해 피해에 대한 공포와 증오를 가지고 혐오범죄와 유사한 공격을 가하기도 한다.<sup>24)</sup>

(4) 혐오범죄는 다른 범죄에 비해 집단적 속성이 강하다. 생명 또는 신체에 대한 가해(대인범죄)나 재물에 대한 가해(대물범죄)에 있어 모두 다른 범죄에 비해 2배 이상 집단범죄의 빈도가 높게 나타난다.(대인범죄의 경우 46% : 17%, 대물범죄의 경우 68% : 33%로 혐오범죄의 경우가 다수범죄자에 의해 발생한다는 통계.) 가해집단이 클수록 범죄를 저지르기가 더 쉽고, 범죄자 개인의 책임의식이 희석되기 쉬우며, 피해자 역시도 다수가 될 가능성이 높다.<sup>25)</sup>

(5) 혐오범죄의 가해자는 피해자를 모르는 사람인 경우가 많다. 특히 대인범죄의 경우 그러한 경향이 크다. 혐오범죄가 아닌 범죄의 경우 대인범죄는 주로 아는 사람에게 가해지는 경우가 많다. 또한 혐오범죄자는 대체로 10대에서 20대 초반에 집중되어 있다. 즉 청년층에서 많이 나타난다.(13세~25세가 61%를 차지한다는 통계가 있다) 이에 더해 혐오범죄자의 성별은 피해자의 성별에 관계없이 대부분 남성이다. 남성 피해자의 99%와 여성 피해자의 90%가 남성의 가해에 의해 피해를 입었다고 조사된 바 있다.<sup>26)</sup>

(6) 피해자들은 21세 이하의 남성에 집중되어 있고, 면식이 없는 자에게 피해를 당하는 경우가 많지만 면식이 있는 자에게 피해를 당한 경우 더욱 깊은 상처를 입게 된다.<sup>27)</sup>

(7) 혐오범죄자의 특성으로서, 이들은 혐오범죄집단에 대해 강한 결속감과 자부심을 가지며, 상징을 동원하여 집단성을 공유하는 경향이 있다. 약물남용 등 정신병리학적 취약성을 가지는 경우가 많고, 권위주의를 지향하는 성격을 지닌다. 또한 혐오범죄자들은 계획적으로 범죄를 저지르는 경우가 많다.<sup>28)</sup>

(8) 피해 경험의 특성으로서, 혐오범죄 피해자들은 다른 범죄 피해자와 비교했을 때 매우 낮은 자긍심이라는 정서적 반응이 주요하게 나타난다. 피해자는 자긍심 유지를 위해서 가해 집단에 대한 증오와 적대감을 동원하게 되는 경우가 발견된다. 또한 다른 범죄 피해자들에 비해 외상 후 스트레스 증후군, 우울증, 분노 등을 경험하는 빈도가 높아 심리적 후유증의 심각성이 더 큰 것으로 조사된다. 또한 심리적 충격의 지속성이 크고 ‘침투적 사고’(의식 속에 떠오르는 원하지 않는 불쾌한 생각)를 더욱 연속적으로 경험하는 것으로 보고된다.<sup>29)</sup>

(9) 혐오범죄는 피해자 집단의 누적된 공포와 불안, 분노가 가해자 집단에 대한 공격으로 이어져 혐오범죄의 피해가 혐오범죄의 가해로 전환되는 ‘내부전환성(interchangeability)’을

22) 같은 논문, 같은 쪽.

23) 같은 논문, 30-31쪽.

24) 최응렬·정승민, 앞의 논문, 375쪽.

25) 같은 논문, 375-377쪽.

26) Herek, Cogen, & Gillis J.R., *Victim Experiences in Hate Crime Based on Sexual Orientation*, Journal of Social Issues, 58(2), 323쪽. 최응렬·정승민, 앞의 논문, 377-378쪽에서 재인용.

27) 최응렬·정승민, 앞의 논문, 380쪽.

28) 같은 논문, 378-379쪽.

29) 이동명·노상욱, 앞의 논문, 374-375쪽.

가지기도 하고, 뒤에서 살펴보는 것과 같이 혐오범죄 피해의 영향이 피해자 집단 전체에게 미친다는 점에서 2차 피해자화 및 지역사회 붕괴로 이어지기도 한다.<sup>30)</sup>

#### 4. 혐오범죄가 피해자 개인, 표적 집단, 전체 사회에 미치는 영향<sup>31)</sup>

##### (1) 피해자 개인에 대한 영향

혐오범죄의 피해자들은 다른 범죄 피해자들보다 높은 정도의 취약성(vulnerability)을 나타내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피해자들은 신체적 피해의 정도와 상관없이 극도의 정신적 모욕감을 경험한다. 그 후유증으로 피해자들은 우울증, 침잠, 불안, 무력감, 고립감, 외상 후 스트레스 증후군을 겪게 되는데, 이는 강간 피해자들과 비견된다고 한다.

한편, 로렌스(Lawrence)는 인종에 기반한 혐오범죄의 경우 소수 인종 피해자와 백인 피해자들 모두 심각한 정신적 충격을 경험하기는 하지만, 방어적인 행동변화라는 이차적인 영향에서는 차이가 있다고 강조한다. 즉 소수 인종 피해자들이 상대적으로 더욱 방어적인 태도를 취하게 된다는 것이다. 그것은 혐오범죄의 특성상 소수자가 피해를 입었을 때, 피해자와 그가 속한 사회집단에 대한 편견과 폭력의 역사, 그리고 사회적 맥락을 건드림으로써 발생한다. 힘들어 억눌러왔던 자신의 열등함에 관한 문화적 가르침을 떠올리게 하고, 굴종의 표식을 모든 사람들이 볼 수 있도록 새기는 폭력으로서 혐오범죄를 경험하게 된다는 것이다. 피해자가 매우 낮은 자긍심을 경험하게 되는 것은 이러한 이유 때문으로 보인다.

피해자는 자신을 피해자로 만든 그 특성을 바꿀 수 없으므로 또 다시 공격당할지도 모른다는 두려움을 갖게 되고, 낙인찍기를 통해 사회적으로 자신이 실패할 것이라는 예상을 영구적으로 보유하게 된다. 낙인찍기는 폭력을 동반하지 않는 경우에도 낮은 자긍심을 유발하지만, 폭력을 동반한 경우 그 심각성은 더욱 커진다.

##### (2) 표적 집단(target group)에 대한 영향

혐오범죄는 피해자 개인에게만 피해를 입히는 것이 아니라 사실상 표적 집단 전체에 대해 피해를 유발한다. 자신이 속한 집단의 구성원 중 누군가의 마당에서 십자가가 타오르는 것을 목격하거나 유대인이 사는 주택 벽에 나치의 갈고리십자를 그려놓은 것을 본 다른 유대인의 경우, 동정이나 공감을 느끼는 것을 넘어 자기 자신이 피해를 경험한 것과 같다고 느끼고 인식하게 된다는 것이다. 결국 혐오범죄는 피해가 피해자 개인에게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전체 표적집단에 걸쳐 영향을 미치게 하고, 불안, 공포, 분노를 촉발시킴으로써 가해자가 속해 있다고 여겨지는 집단에 대한 공격으로 전환될 수 있다는 점에서, 집단 간의 지속적인 긴장관계를 형성하게 한다. 로렌스는 바로 이러한 점 때문에 혐오범죄가 다른 범죄와 구별되고, 혐오범죄가 다른 범죄에 비해 더 큰 사회적 위해를 가한다고 본다.

##### (3) 전체 사회에 대한 영향

로렌스는 이에 더해, 혐오범죄가 다른 범죄에 비해 사회 전체에 대해서도 더 큰 해학을 미친다고 지적한다. 피해자들은 또 다시 그들의 특성으로 인해 피해를 받을 가능성이 있다고 여겨짐으로써, 그 주위로부터 피해의 가능성으로부터 멀리 떨어지기 위한 심리에 의해 누적적인 고립 상태에 놓이게 되어 사회적 단절을 불러일으킨다는 것이다. 결국 이는 시민

30) 같은 논문, 375-376쪽.

31) Lawrence, 앞의 논문, 30-37쪽을 참조.

들이 공유하는 평등이나 조화의 가치를 해함으로써 전체 사회에 악영향을 미치게 된다.

### 5. 혐오범죄의 실태

미국의 경우 1990년 연방혐오범죄통계법이 통과된 이래 연방수사국(FBI)은 매년 혐오범죄와 관련한 통계를 내고 체계적으로 이를 공개하고 있다.<sup>32)</sup> 인종, 종교, 성적지향, 종족 및 출신국가, 장애 등에 대한 혐오범죄에 대한 통계를 세부적으로 내고 있고, 2009년 10월 이른바 ‘매튜 셰퍼드<sup>33)</sup> 법’으로 불리는 혐오범죄방지법(Matthew Shepard and James Byrd, Jr. Hate Crimes Prevention Act)이 통과되면서 앞으로 트랜스젠더에 대한 혐오범죄 역시 통계에 잡히게 되었다.

이 자료에 의하면 2008년 미국의 혐오범죄는 7,783건으로 2007년 7,624건에 비해 2%(160건) 정도의 증가율을 보였고, 인종에 대한 혐오범죄가 51.3%, 종교에 대한 혐오범죄가 19.5%, 성적지향에 대한 혐오범죄가 16.6%, 종족 및 출신국가에 대한 혐오범죄가 11.5%, 장애에 대한 혐오범죄가 1% 순으로 나타났다.

인종에 대한 혐오범죄는 흑인에 대한 혐오범죄가 압도적으로 많았고, 백인에 대한 혐오범죄가 뒤를 이었다. 종교에 대한 혐오범죄는 2/3 가량이 유대교에 대한 것이었고, 다른 종교나 이슬람에 대한 혐오범죄 등이 나머지를 차지했다. 성적지향에 대한 혐오범죄는 남성 동성애에 대한 것이 60%(776건) 정도를 차지하고, 게이와 레즈비언을 포함한 동성애(307건), 여성 동성애(154건), 이성애(33건), 양성애(27건)에 대한 혐오범죄 순으로 나타났다. 종족 및 출신국가에 대한 혐오범죄는 히스패닉에 대한 혐오범죄가 많은 부분을 차지하였다. 장애에 대한 혐오범죄는 정신적 장애에 대한 것이 56건으로 70% 정도를 차지하고 신체적 장애에 대한 것이 22건이었다. 한편, 복합적 편견에 의한 혐오범죄는 3건으로 보고되었다.

이와 같은 혐오범죄의 실태는 각 사회의 구성이나 경험, 맥락에 따라 다를 수밖에 없다. 역으로 이러한 실태는 각 사회의 이념이나 특성을 보여주기도 할 것이다. 혐오범죄 방지를 위해 이러한 실태를 파악하는 것 역시 중요하지 않을 수 없다. 미국의 연방혐오범죄통계법은 혐오범죄의 실태 파악에 있어 하나의 모델이 될 수 있을 것이다.

## III. 혐오범죄 관련법의 제도화 가능성

### 1. 한국에서의 혐오범죄 제도화 가능성의 모색

한국 사회에서도 혐오범죄는 발생하고 있는 것일까? 혐오범죄에 대한 역사적 경험과 인식은 어떤가? 혐오범죄라는 개념은 한국 사회에서 유효한 것일까?

한국전쟁을 전후하여 이루어진 ‘빨갱이 학살’과 같이 이념에 의한 무차별적이고 직접적인 범죄는 혐오범죄로 분류될 수 있다. 한국 사회 역시 혐오범죄에 대한 경험을 가지고 있다고 볼 수 있는 것이다. 그런데 지금의 혐오범죄는 어떤 형태로 발생하고 있는 것일까?

한국사회에서도 혐오범죄로 포섭될 수 있는 범죄들은 광범위하게 벌어지고 있다고 보인다. 이주노동자, 여성, 트랜스젠더, 노숙인, 동성애자, 성매매 여성, 장애인, ‘혼혈인’ 등을 대

32) <http://www.fbi.gov/ucr/ucr.htm> 에서는 1995년 이후의 혐오범죄와 관련한 자세한 통계를 연도별로 살펴볼 수 있다.

33) 매튜 셰퍼드는 게이라는 이유로 1998년 와이오밍 주의 라라미 근처에서 끔찍한 모습으로 치명적인 상해를 입은 채 발견되었으나 결국 사망하였다. 매튜 셰퍼드에 대한 잔인한 살해는 전국적인 분노를 일으키면서 와이오밍 주와 미연방이 혐오범죄방지법을 입법화할 것을 요구하는 계기가 되었다.

상으로 하는 각종 살인, 상해, 폭행, 성폭력, 협박, 집단 따돌림, 금품갈취, 재물손괴, 모욕, 차별선동 등은 그리 어렵지 않게 발견할 수 있고, 특정 집단에 대한 이른바 ‘묻지 마 범죄’ 처럼 전형적인 혐오범죄 역시도 일어나고 있다. 이와 같은 혐오범죄는 위에서 살펴본 것과 같이 혐오범죄의 특성을 지니고 특수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점에서 한국에서도 혐오범죄를 처벌할 필요성이 있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혐오범죄라는 개념을 도입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복잡한 문제가 얽혀 있는 것으로 보인다.

(1) 범행동기는 이미 양형사유로 참작되는 것이므로, 혐오범죄가 반드시 제도화될 필요성이 있는가? 한국의 법체계 내에서 적합한 방식으로 운용될 수 있는가? 또, 혐오범죄를 처벌하는 것은 어떠한 법익을 보호하기 위한 것인가?

(2) 그렇다고 소수자에 대한 모든 범죄에 있어서 양형사유로 참작되고 있다고 볼 수 있는가? 오히려 사회적으로 낙인찍힌 소수자의 피해는 어쩌면 ‘가벼운 것’, ‘어쩔 수 없는 것’, 심지어 ‘정당방위’나 ‘당연한 것’, ‘범죄로서 성립되지 않는 것’으로 여겨지지는 않는가? 이러한 것이 현실이라면 혐오범죄의 제도화를 통해 이러한 문제를 단번에 뛰어넘을 수 있는가?

(3) 증오나 혐오, 편견이라는 범행 동기보다 ‘소수자에 대한’ 또는 ‘대상이 소수자라는 지위를 가지는 점을 이용한’ 범죄라는 것이 더욱 부각될 필요가 있는 것은 아닌가? 소수자들이 당면하고 있는 범죄의 취약성이 혐오범죄라는 개념으로 환원될 수 있는가? 즉, 혐오범죄의 개념으로 오히려 소수자에 대한 범죄의 범위가 축소될 가능성은 없는가?

(4) 결국 무엇을 혐오범죄로 규정할 것인가? 혐오범죄에 해당하는 행위의 포섭범위를 어디까지로 할 것인가? 아우팅 협박은 혐오범죄에 포함되는가? 혐오발언이나 차별을 선동하고 편견을 조장하는 광고는 혐오범죄에 포함시킬 수 있는가? 장애인에 대한 성폭력은 혐오범죄인가?

(5) 증오나 혐오, 편견이라는 개념을 법적으로 개념화할 수 있는가? 범죄에 있어서 증오나 혐오, 편견이 어떻게 개입되고 있는지에 대한 자세한 분석이 선행되어야 하는 것은 아닌가?

(6) 혐오범죄의 심각성에 대해 한국 사회에서 제대로 인식하고 있는가? 과소평가되고 있는 것은 사실인가? ‘피해집단’ 내에서는 어떠한 경험을 실제로 하고 있으며 얼마나 절박하게 혐오범죄의 제도화가 필요하다고 인식하고 있으며 그것을 요구하고 있는가?

(7) 어떤 사회적 집단에 대한 범죄를 혐오범죄로 규정할 수 있고 어떠한 집단이 배제될 가능성이 있는가? 서구나 미국에서는 노숙인이나 성판매 여성에 대한 규정은 찾기 어렵는데 이들에 대한 범죄가 어쩌면 오히려 심각한 것은 아닌가?

(8) 결론적으로, 혐오범죄 제도화의 필요성과 유효성, 적절성, 적합성, 난점과 갈등 등에 대해 우리는 충분히 해명하고 있는가?

이뿐만 아니라 생각하지 못한 어려움과 복잡함은 대단히 많을 것 같다. 이러한 의문들에 대해 모두 바로 대답하기는 어렵겠지만, 혐오범죄에 대한 논의를 진척시키면서 문제가 될 수 있는 것들에 대해 좀 더 많은 고민이 필요할 수밖에 없다.

## 2. 혐오범죄 관련법 제도화의 가능한 형태

해외 입법례에 따르면, 혐오범죄와 관련하여서는 4가지 형태가 존재한다고 한다. (1) 편견에 동기화된 특정한 행위를 독립적인 혐오범죄로 규정하는 유형, (2) 혐오에 의한 범죄의

경우 가중처벌하는 유형, (3) 혐오범죄를 별개의 민사상 청구원인으로 하는 유형, (4) 혐오범죄에 관한 정부의 통계작성의무를 부과하는 유형 등이 그것이다.<sup>34)</sup> 이러한 유형들은 입법례에 따라 어느 한 가지만 채택하는 경우도 있고, 중복적으로 채택하는 경우도 있다. 미국의 경우 위의 4가지 형태 모두가 존재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고, (1) 유형과 (2) 유형이 가장 기본적인 형태인 것으로 보인다.

한국의 경우 가장 현실성 있는 형태는 (2) 유형으로 특정범죄가중처벌법과 같은 형태로 혐오범죄를 가중처벌하는 방법을 모색할 수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아우팅’과 같은 행위를 범죄화할 필요가 있다면, (1) 유형 역시도 적극적으로 요구할 수 있을 것이다. 이에 더해 국가의 혐오범죄 방지조치의무를 부과하는 법규를 만드는 것이나, 피해자의 보호와 회복을 위한 제도를 마련하는 방법, 수사절차나 민사상 절차에서 피해자를 배려하는 조항 역시도 고려될 수 있을 것이다.

### 3. 차별금지법과의 관계

혐오범죄 관련법은 차별금지법과 영역 또는 맥락을 다소 달리한다. 혐오범죄와 관련한 제도는 무엇보다도 국가의 형벌권이 발동되는 문제로서 엄격하고 신중한 판단이 요구된다. 무엇을 범죄로 규정하고 그에 대해 어떠한 형벌을 가할 것인지는 시민들의 법의식을 기초로 한 입법자의 광범위한 재량에 속하는 것이라고는 하지만, 그 법제도가 적용되는 사람들의 인권이나 기본권을 가장 강력하게 제한하는 것이기도 하기 때문이다. 혐오범죄에 대한 처벌이 과도하게 도덕적으로 흐르거나 불명확한 규정을 바탕으로 이루어진다면 오히려 인권침해를 심화시킬 수도 있다. 따라서 혐오범죄와 관련한 처벌규정을 마련할 때에는 대중적인 증오나 혐오에 치우쳐 입법되지 않도록 할 필요가 있다. 물론 그렇다고 아무런 형벌효과를 발휘하지 못하게 구색 맞추는 정도에 이르러서도 안 될 것이다. 그런데 현실적으로는 입법과정에서 후자의 경우가 될 가능성이 높아 보이는 것이 문제이다.

이와 달리 차별금지법은 형벌권 발동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을 수 있다. 이제까지 마련된 차별금지법안에는 형법적인 요소가 거의 존재하지 않는다. 국가인권위원회 권고법안에서는 벌칙규정이 없고, 정부법안과 노회찬의원안에는 진정절차와 관련하여 진정인 및 그 관계자에 대해 불이익조치를 하였을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는 규정이 있을 뿐이다. 그러나 이러한 조항은 차별행위에 대한 구제절차를 방해하는 행위를 처벌하는 것으로, 차별행위로 규정되거나 혐오에 기반한 어떤 행위를 처벌하는 조항은 아니다. 즉, 차별금지법은 무엇이 차별행위인지 정하고 이에 대한 행정적, 사법적 구제절차를 규정한 법이지 특정한 행위를 처벌하기 위한 법은 아니다.

차별금지법 내에 차별규정과 관련하여, 혐오범죄를 차별금지법상 차별행위로 규정할 수 있는가? 기존의 차별금지법안은 차별개념을 직접차별뿐만 아니라 ‘간접차별’, ‘괴롭힘’, ‘차별을 표시하거나 조장하는 광고행위’까지 확장하고 있다. 이렇게 본다면 혐오범죄라는 개념이 제도화되지 않다 하더라도 혐오범죄로 평가될 수 있는 행위들, 예를 들어 혐오발언(혐오표현, hate speech<sup>35))이나 아우팅 등을 범죄화하지 않은 채 차별행위로 포섭시킬 수도 있을 것이다. 차별의 범위를 확장하는 것은 쉽지 않은 일이지만, 실질적으로 차별로 이어지거</sup>

34) [http://en.wikipedia.org/wiki/Hate\\_crime](http://en.wikipedia.org/wiki/Hate_crime)

35) 법적으로 혐오발언 또는 혐오표현이란 인종, 젠더, 종족, 성적지향, 국적 등으로 구분되는 특정한 집단에 대해 폭력이나 편견을 조장하거나 멸시나 협박을 가하는 것으로서 규율의 대상이 되는 발언, 거동 또는 행위, 저술, 표명 등을 말한다고 한다. [http://en.wikipedia.org/wiki/Hate\\_speech](http://en.wikipedia.org/wiki/Hate_speech)

나 차별의 결과로서 평가되지만 법의 규율 영역 바깥으로 밀려나 있는 영역들을 차별의 범위 내로 포섭하는 것은 적극적으로 고려할 만하다고 생각된다.

반대로 차별금지법상 차별행위 중 일부를 일종의 혐오범죄로서 처벌하는 규정을 넣을 수 있는가? 심각한 차별행위의 경우 구체책으로서 형벌 조항을 추가하는 것도 고려할 수 있겠지만, 행정적, 사법적 구제절차로서 구제가 가능하고, 다른 방법으로 예방조치가 가능하다면 차별행위를 범죄화하는 것에 대해서는 신중할 필요가 있고, 차별금지법이 차별행위를 처벌하기 위한 형법적 목적을 가지지 않는다는 점에서도 조심스러운 점이 있다. 비교하자면 오히려 징벌적 손해배상과 같은 제도를 적극적으로 도입하는 것이 더 바람직한 방향이라고 생각한다. 다만 혐오범죄를 처벌하는 규정이 만들어진 상황이라면, 혐오범죄에 대해 조사하고 통계를 작성하며 혐오범죄를 예방할 의무 등을 차별금지법에 삽입하는 것이 불가능하지만은 않을 것이다.

#### IV. 혐오범죄 관련법 제도화의 의미

청소년 동성애에 대한 최근의 연구에 따르면, 청소년 동성애자의 절반 이상이 언어적 모욕을 당한 적이 있고, 20% 정도가 신체적 폭력의 위협을 받거나 개인소지품이 망가진 적이 있었으며, 주먹질이나 발길질, 무기 등으로 공격당한 경험이 있는 비율도 10%가 넘는 수준이었다.<sup>36)</sup> 청소년 동성애자뿐만 아니라 혐오범죄의 가해와 피해에 있어서 가장 취약한 청소년기의 소수자는 이러한 혐오범죄에 노출될 가능성이 매우 크고, 또래집단들 사이의 소문이 빠르게 퍼지고 공개적으로 범행이 일어날 가능성이 높아 그 피해의 영향도 상당하다. 그러나 이러한 행위는 공식적으로 범죄행위로 다루어지거나, 형사절차로 가지 않더라도 적어도 이것은 범죄라는 개념으로 취급되지는 않는다. 이로 인해 피해는 명백하고 광범위하지만, 가해의 책임은 온데간데없이 다루어지는 것이 현실이다. 한편, 트랜스젠더가 애인인 것을 알고 살해한 사건<sup>37)</sup>과 같은 경우도, 명백히 혐오범죄로 다룰 수 있음에도 ‘충격’적인 사건으로 선정적인 가십거리에 지나지 않는 방식으로 소비될 뿐이다. 여기서도 혐오범죄의 심각성은 드러나지 않고, 오히려 범죄의 원인과 책임이 가해자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피해자에게 있는 것으로 표현되며, 가해자의 격분이 당연하다는 방식으로 다루어지기가 쉽다.<sup>38)</sup>

이러한 현실에 비추어, 혐오범죄와 관련한 법제도가 만들어지는 과정과 그 결과는 혐오범죄의 심각성과 문제점을 드러내는 데 중요한 계기가 될 수 있다. 혐오범죄의 존재를 가시화하고, 그것이 사회적으로 용인될 수 없다는 것을 명백하게 드러내게 될 것이다. 그리고 혐오범죄와 관련한 법제도를 통해 혐오범죄를 억지하여 생명, 신체, 정신, 재산에 대한 침해로서 가장 심각한 형태의 인권침해를 방지를 피할 수 있게 된다는 의미 역시 중요하다. 이를 통해 소수자의 인권을 실질적으로 향상시킬 수 있고, 인권교육의 효과 역시 낼 수 것이다.

그러나 혐오범죄의 제도화는 단지 혐오범죄를 처벌하는 것에 그치는 것은 아니다. 무엇보다도 혐오범죄가 발생하게 되는 근본적인 원인을 사회적으로 추적하여 드러내고, 그것을 넘어서기 위해 사회적인 자원과 노력을 투자하는 데 제도적 초점이 두어져야 할 것이다. 성폭

36) 강병철·하경희, 「청소년 동성애자의 동성애 관련 특성이 자살 위험성에 미치는 영향」, 《청소년학연구》 제12권 제3호, 2006, 278-279쪽.

37) "여친이 트랜스젠더?" 격분한 20대 男 살인 '충격', <서울신문> 2010. 5. 28. 자.

38) 일란, 「차별경험, 어떻게 이해할 것인가」, <올바른 차별금지법 제정을 위한 쟁점포럼 첫 번째, '모욕감'을 중심으로 한 차별의 재구성> 자료집, 반차별공동행동, 2010, 15쪽.

력에 대한 문제점을 직시하기보다 성폭력에 대한 형벌을 강화하는 방법만으로 성폭력을 줄이거나 근절할 수 없듯, 혐오범죄 역시 그 폭력의 근원과 고리들을 차단하고 끊어내는 데에 목표를 둘 필요가 있다. 그러기 위해서 혐오범죄의 제도화 과정은 처벌조항이나 가중처벌조항을 신설하는 데 그쳐서는 안 되고, 광범위한 조사와 연구, 교육과 변화를 위한 실천들을 모색하는 방향으로 나가야 할 것이다.

## V. 나가며

혐오범죄의 가벌성이 높은 것은 분명하다. 따라서 이에 대한 형벌적 접근은 반드시 필요하다. 특히 기존에 형법으로 규정된 범죄가 혐오범죄에 해당할 경우, 가중처벌의 방식으로 그 가벌성을 드러내는 것은 ‘양형사유’에 간하지 않고 인권과 차별, 억압과 권력의 문제를 밝히는 일이 될 것이다. 그러나 지금 당장 이 낫설기만 한 혐오범죄의 제도화를 추진하여 실현이 가능한지는 솔직히 의문이다. 그렇다 하더라도 혐오범죄에 대한 심각성을 우리가 충분히 인식하고, 조금씩이라도 이와 관련한 역량들을 쌓아나갈 필요는 있을 것이다. 무엇보다 다양한 입법례를 보다 체계적이고 전문적으로 검토하여 현실성 있는 대안을 마련하는 동시에, 우리가 경험한 ‘피해’의 의미를 보다 명확하게 드러내고 그 심각성과 문제점을 드러내는 것이 중요하다.

한 가지 더 점검해야 할 점은 특정 집단에 대한 범죄를 혐오범죄로 규정할 경우, 그 집단 외의 집단과의 형평성의 차원에서, 헌법상 평등원칙 위반의 문제가 제기될 수 있다는 것이다. 가해자 역시 동일한 범죄를 저질렀음에도 자신이 왜 가중처벌을 받아야 하나면서 평등원칙 위반을 주장할 수도 있다. 이러한 헌법적인 문제에 대해서도 좀 더 고민하고 고려할 필요가 있는 듯하다.

지금 차별금지법을 이야기하는 과정 속에서 혐오범죄에 대해 이루어지는 논의가 소중한 것은, 차별의 한 모습으로서 소수자들이 더 심각하고 더 잦은 범죄에 노출되어 있다는 것을 드러낼 수 있다는 점이라고 생각한다. 범죄 피해의 위험이 모두에게 균등하게 있는 것이 아니라, 범죄의 가해와 피해 자체가 일상적인 권력의 문제라는 것을 다시 한 번 깨닫게 한다. 또한 혐오범죄의 개념을 통해 성판매 여성에 대한 강간을 강간으로 보지 않는 등 오히려 가장 범죄 피해에 노출되어 있는 사람들을 보호하지 못하는 우리 법률과 사법에 대한 중대한 문제제기를 하게 되기도 한다. 이러한 인식을 통해 혐오범죄뿐만 아니라 사법체제를 보다 현실적이고 인권의 정신에 부합하는 방식으로 재구성하는 데에 법제도를 고민하는 우리 반차별공동행동이 일정한 역할을 할 수 있으면 좋겠다. 마지막으로, 분명히 심각하고 절박한 피해는 있는데, 그것을 제도적으로 보호하거나 적절한 구제를 제공하지 못하는 사각지대가 있다는 것을 차별금지법과 혐오범죄 관련 제도에 의해 제대로 드러낼 수 있었으면 한다. 차별 선동이 횡행하고 차별의 구조 속에서 일어나는 여러 사건들이 아무것도 아닌 것이어야 하는 지금의 현실은 참기도 어렵다. 분명 문제가 있다.